

碩士學位論文

동아시아 組織犯罪의 國內浸透 實態와
對應方案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昌 君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宋 良 化

2002年

동아시아 組織犯罪의 國內浸透 實態와 對應方案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昌 君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月 日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宋 良 化

宋良化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2年 1月 日

委 員 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研究의 目的	1
第 2 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3
第 2 章 組織犯罪의 概觀	4
第 1 節 組織犯罪의 意義	4
1. 개념 정립	4
2. 조직범죄의 유형과 특성	5
第 2 節 組織犯罪의 危險性	8
1. 끈질긴 생명력	8
2. 각국의 일반적인 피해유형	9
3.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범죄유형	12
第 3 章 東아시아 組織犯罪의 現況	18
第 1 節 三合會	18
1. 어원과 개념	19
2. 삼합회의 역사적 변천	20
3. 삼합회의 문화	22
4. 삼합회의 조직구조	23
5. 삼합회 활동 현황	27
6. 대만계 삼합회	29
7. 중국의 흑사회	30

第 2 節 러시아 마피아	31
1. 마피아 말의 유래	31
2. 마피아 조직의 특징	32
3. 러시아 마피아	35
4. 러시아 마피아의 실태	41
5. 주요 활동 상황	43
6. 러시아 마피아의 팽창원인	45
7. 러시아 마피아의 국제화	47
第 3 節 야쿠자	48
1. 야쿠자의 형성	48
2. 야쿠자의 문화	51
3. 야쿠자 변천과정	53
4. 야쿠자의 조직현황과 원리	58
5. 야쿠자의 활동영역	63
6. 야쿠자의 합법화	66
7. 한국계 야쿠자	67
8. 야쿠자 활동의 국제화	68
第 4 節 우리나라의 組織暴力과 國際組織犯罪와의 連繫	68
1. 의미 내용의 차이	68
2. 우리나라 조직폭력의 형성과 변천 과정	69
3. 우리나라 조직폭력의 실태와 세력 분포	73
4. 국제조직범죄와의 연계 관계	73
第 4 章 동아시아 組織犯罪의 國內浸透 實態	75
第 1 節 우리나라에서의 組織犯罪 誘發 環境	75
1. 국제적 치안수요의 증가	75
2. 국내·외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요인	77

第 2 節 동아시아 組織犯罪의 國內 浸透 實態	78
1. 우리나라를 노리는 조직 범죄	78
2. 일본 야쿠자	79
3. 러시아 마피아	81
4. 중국계 삼합회	82
5. 소결론	83
第 5 章 동아시아 組織犯罪에 대한 우리의 對應 方案	84
第 1 節 對應方案의 前提要件 및 問題點	84
1. 국제조직범죄 대응의 전제조건	84
2. 우리의 대응실태 및 대응상 문제점	85
第 2 節 우리나라의 機關別 對應現況	87
1. 검찰	87
2. 경찰	87
3. 국가정보원	88
4. 관세청	89
5.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89
第 3 節 우리의 對應 方案	89
1. 법·제도적 장치의 구비	89
2. 국제조직범죄 수사와 관련한 수사제도의 개선	92
3. 정보활동강화	99
4. 국제협력 강화 방안의 강구	103
5. 해외주재관의 증원과 제도의 적극활용	107
6. 국내·외적인 홍보·계몽 활동의 강화	107
第 6 章 結 論	108
參考 文獻	110

表 目 次

<表 1>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사범 단속 현황	13
<表 2> 위조달러 반입유통 단속 현황	14
<表 3> 여권범위반사범 단속 현황	14
<表 4> 밀반입 총기류 단속 현황	15
<表 5> 밀입국사범 단속 현황	17
<表 6> 폭력단 구성원 및 준 구성원의 검거인원	59
<表 7> 야쿠자에 의한 각성제 사범의 검거인원의 추이	64
<表 8> 금융, 불량채권 관련 사범의 검거 상황 추이	66
<表 9> 내·외국인 출입국 현황	75
<表 10> 우리나라의 입·출항 상품량	76
<表 11> 국제통신의 양	76
<表 12> 국제 자금거래 내역	77



그 립 目 次

<그림 1> 전통적 조직 구조	24
<그림 2> 현대의 조직 구조	25
<그림 3> 마피아 조직의 내부 체계도	32
<그림 4> 국제조직범죄의 국내침투 실태	79

第 I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오늘날 국제화와 세계화는 날로 세를 더해가면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각국은 국경 없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어 움직이고 있고, 이에 따라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는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정치와 경제의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발전과 공산주의의 몰락, 국가간의 무역전쟁,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정보통신의 발달, 개인의 도덕적 해이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종래의 범죄 양상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범죄도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국제적·초국가적인 현상으로 변화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조직범죄’ (Organized transnational crime)는 국경을 초월하여 마약, 총기밀매, 여권과 화폐의 위조·변조, 밀입국 등의 범죄를 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암적 존재로 등장하였다. 특히 미국, 일본과 개방화의 물결이 한창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은 조직범죄집단에 의해 오래 전부터 몸살을 앓아오고 있다. 이런 범죄집단은 그 활동수법이 고도화, 전문화, 다국적화, 공용화되고 정보네트워크,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 순식간에 국경을 넘나들면서 마약밀매, 무기 밀거래, 자금세탁, 컴퓨터 해킹 등 범죄 형태도 날로 다양화, 침예화 되고 있어 인류의 안녕과 평화를 담보로 하면서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¹⁾ 최근에는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나, 관계당국은 아직까지

1) 이태언, “국제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比較法學 第12輯, 「釜山外國語大學教 比較法研究所」, 2001, 164면.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 안이한 판단아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외국의 조직범죄들이 우리나라에 거점을 확보하려고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초기 진압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주변 환경이 조직범죄를 저지르기에 적합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조직범죄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하세계의 패자가 없는 신천지로 보일 수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와 지정학적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서 3면이 바다라는 여건도 외국의 범죄조직이 잠입하여 뿌리내리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향락산업의 발달, 금전만능 풍조에서 연유하는 한탕주의 사고방식, 서구 물질문화의 무분별한 도입,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각종 행정규제완화와 특히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사람·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투자되며 거래될 수 있도록 개방되고 있어²⁾ 범죄조직들이 서식하기에 무척 유리한 여건을 두루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언론은 국제조직범죄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도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조직범죄들의 국내조직폭력집단과의 연계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국제조직범죄의 국내침투실태를 정확히 추적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향후 피해 상황은 외국처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제조직범죄, 특히 동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김창희, "濟州國際自由都市 推進戰略", 「濟州道議政會」, 2001, 85면.

第 2 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본 논문은 동아시아권에 기생하고 있는 조직범죄가 국내에 침투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직범죄의 제반 이론적 연구를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국가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러시아 마피아(Mafia), 중국의 삼합會(Triads), 일본 야쿠자(Yakuza)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들 집단들이 우리나라에의 침투 및 연계 실태, 향후 영향력 등을 가늠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주로 관련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논문과 국내·외의 주요 간행물에 대한 문헌조사, 인터넷에 의한 자료 검색,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에 있는 미발표 자료들을 기술적인 방법과 비교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검토하였다.

동아시아 조직범죄 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과 편제를 택하였다. 제2장에서는 조직범죄를 둘러싼 일반적인 논의를 조감하고, 이들 조직범죄들이 국제무대로 진출함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들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향후 미칠 우려가 농후한 국제조직범죄인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야쿠자에 대한 현황 등을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국제조직범죄가 우리나라에 침투한 사례와 앞으로의 예상되는 방향, 우리나라 조직범죄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들 조직들의 향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처방안 등을 모색하고 대책을 제시하였다.

第 2 章 組織犯罪의 概觀

第 1 節 組織犯罪의 意義

1. 概念 定立

조직범죄(Organized Crime)의 개념설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조직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없다고 보여진다. 이는 조직범죄의 사회적 역사가 일천한데도 그 이유가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성격이 다양하고 영역을 한계 짓기가 쉽지 않아 개념 정의 자체가 어려운 탓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범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조직범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외국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조직범죄의 개념과 정의를 나름대로 세밀히 정리하고 있다. 특히 Frank Hagan은 1983년 이전 15년 동안의 13개 저서와 일부 정부보고서가 조직범죄 개념으로 제시했던 특성들을 분석하였다.³⁾ Hagan의 분석에 의하면, 조직범죄는 ① 다수인에 의한 위계적 조직체(형태)로서, ② 불법적 활동에 의한 이득을 추구(목적)하며, ③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고, ④ 범집행으로부터 면책을 유지하기 위해 부패를 이용한다는 점에서⁴⁾ 조직범죄에 대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범죄의 공통적인 특성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조직범죄를 ‘사회의 합법적인 분야와 범죄적인 부분으로부터 상당수가 가담하고, 참여자들 사이에 위계질서와 업무분담이 이루어진 지속적인 조직체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라 정의

3)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는 崔仁燮, “組織犯罪의 特性과 實態”, 刑事政策研究, 제 18호, 「韓國刑事政策研究院」, 1994, 10면 이하 참조.

4) 梁彰培, “組織暴力的 實態와 對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7면 이하.

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직범죄는 오늘날 그 활동영역을 국제무대로 확대함에 따라 국가간 국경을 초월하여 저지르는 범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국제조직범죄’라는 개념의 사용은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

2. 組織犯罪의 類型과 特性

1) 組織犯罪의 類型

조직범죄의 유형은 국가나 사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Albini는 조직범죄를 네 가지 기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 ① 사회적인 것으로 테러나 과격한 사회운동과 같은 정치적·사회적 조직범죄.
- ② 직접적인 개인적 이득을 노린 집단범죄로서 청소년 갱이나 성인 갱, 집단들에 의한 강·절도와 같은 금전추구위주의 약탈적 집단범죄.
- ③ 심리적 만족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 폭주족, 갱과 같은 집단 내부지향의 조직범죄.
- ④ 무력이나 위협, 협박 등을 사용하여 불법 활동에 참여하는 지속적인 범죄 집단이나 조직으로서 대중의 수요가 큰 불법 활동에 참여하는 지속적인 집단이나 조직으로서 공공의 수요가 큰 곳에 불법용역을 제공하며 정치적 부패를 통한 보호 및 면책을 확보하는 등의 신디케이트범죄 (syndicate crime)⁵⁾ 등이 그것이다.

Albini는 이처럼 조직범죄를 네 가지 기본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조직범죄는 Albini의 분류 중에서 네 번째인 신디케이트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5) 양창배, 앞의 논문, 19면.

2) 組織犯罪의 特性

(1) 一般的인 特性

먼저 미국의 ‘형사사법 기준 및 목표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의 보고서는 조직범죄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 ① 불법적 수단에 의한 합법적 목표의 추구나 불법적 행동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많은 사람의 공조를 요하는 음모적 활동이며,
- ② 권력과 신분의 확보도 동기 요인이 되겠지만, 불법적 재화와 용역에 대한 독점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의 확보에 조직범죄의 주요 목적이 있다.
- ③ 활동은 불법적 용역의 제공에 국한되지는 않고,
- ④ 위협, 폭력, 매수 등 약탈적 전술을 구사한다.
- ⑤ 경험, 관습, 관행상 조직범죄는 조직구성원, 관련자, 피해자 등에 대한 훈육과 통제가 매우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다.⁶⁾

Abadinsky는 조직범죄의 특성을 더욱 세분화 하여 8가지 포괄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 ① 정치적 목적이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으며, 일부 정치적 참여는 자신들의 보호나 면책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비이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② 위계적·계층적이고, 조직구성원이 매우 제한적이며 배타적이다.
- ④ 조직활동이나 구성원의 참여가 거의 영구적일 정도로 영속성이다.
- ⑤ 목표달성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불법적 폭력과 뇌물을 사용한다.
- ⑥ 전문성 또는 조직 내 위치에 따라 임무와 역할이 철저하게 전문화와 분업이다.
- ⑦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쓰거나 관료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지역이나 사업 분야를 독점한다.
- ⑧ 합법적 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규칙과 규정에 의해 통치된다.⁷⁾

6) 점승헌,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책”,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1997, 125면.

이처럼 미국의 ‘형사사법 기준 및 목표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의 보고서와 Abadinsky의 연구는 조직범죄의 일반적인 특성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대체로 조직적인 위계질서, 경제적 이득의 확보, 무력이나 위협의 사용, 면책을 위한 매수, 불법적인 재화와 용역에 대한 독점, 비이념적, 전문화, 비밀규율 등으로 요약 정리 할 수 있다.⁸⁾

(2) 國際的인 特徵

조직범죄는 오늘날 그 영역을 해외로 확대함에 따라 국제성 범죄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국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조직범죄(Organized transnational crime)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① 국제성을 띤 범죄

국제성은 범인의 국적, 범죄지가 어느 국가이냐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범인을 체포한 국가가 처벌할 수 있으며 범죄 집단의 구성원이나 활동영역에서도 국가개념이 배제된다. 즉 집단 구성원이 다양한 국적 소유자로 구성되었거나 세계를 넘나들면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적으로 범죄활동의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준 계기는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과 국제화와 개방화 정책의 추진으로 국경의 기능이 감소되었다. 다음으로는 소련 등 구 공산권의 몰락과 마약의 소비성향도 국제조직범죄의 활동을 크게 고무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⁹⁾

② 복잡하고 다양성을 가진 범죄

국제조직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마약거래라고 할 수 있으나 경제적 이득이 있는 곳이면 지역이나 분야에 관계없이 침투하는 특성을

7) Abadinsky, Howard, *Organized Crime*, (Chicago, Nelson-Hall, 1990), pp.4-6.

8) 최진규, “조직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0, 10면.

9) 國家情報研修院, 「國際犯罪組織 活動 對應論」, 1996, 10-11면.

가지고 있다. 이들 조직은 비단 마약거래 뿐만 아니라 불법무기거래, 예술품 불법거래, 화물절도, 야생동물 밀매, 장기밀매,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등에도 손을 대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수법을 동원하고 있어 화이트칼라 범죄와의 구별이 어려워지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갖는다. 돈벌이가 된다면 지역이나 분야 등에 관계없이 침투하는 범죄이므로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범죄¹⁰⁾이며 종합범죄집단으로 활동하므로 이를 특징짓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③ 국제정보 및 수사 공조체제 운영의 불가피성

국제조직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간의 정보 및 수사기관간의 협조 없이는 범인 체포를 위한 단서포착 및 수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이다.

第 2 節 組織犯罪의 危險性

1. 끈질긴 生命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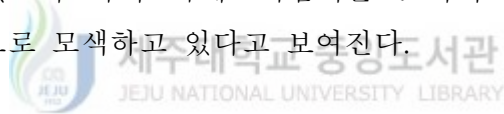
조직범죄는 일단 범죄조직으로서의 틀을 갖추고 나면 자체의 영속성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해체되지 않으며 이를 사후에 제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조직범죄는 ‘바퀴벌레’에 비유되기도 한다. 한 군데를 밟아 틀어막으면 다른 데로 또 튀어나온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범죄에 대한 연구를 ‘암(cancer)에 대한 연구’로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얼굴 없는 명령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도 한다.¹¹⁾ 그만큼 조직범죄에 대한 규제나 연구가 쉽지 않다는

10) 李致錫, “國際組織犯罪의 國內浸透實態 및 對應戰略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7, 12면.

11) 兪南植, “國際組織犯罪 實態 및 對應方案 研究”, 碩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1996, 12면.

것을 시사한다.¹²⁾

오늘날 국제조직범죄의 경우 전 세계적인 세력 확장과 함께 상당히 세련된 형태의 합법적 투자와 교류를 가장하고 있으므로 인해 수사당국의 수사망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게다가 일단 국내에서의 정착이 완료되면 자금과 정보, 기술 등 국내 조직폭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범죄능력을 구비하게 되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 UN도 국제조직범죄가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을 인식하고 기존의 UN 범죄방지 프로그램(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국제조직범죄에 대응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여 오고 있다.¹³⁾ 특히 1994년 11월에는 이태리 나폴리에서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세계각료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조직범죄 합동단속계획”(Global Action Pla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UN은 범죄의 조직화·국제화 현상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모든 관심을 집중해 왔으며 특히 국제조직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2. 各國의 一般的인 被害 類型

1) 國家 統制力에 대한 威脅

국제조직범죄들은 마약거래, 무기 밀거래, 화폐 위·변조 등의 범죄행위로 법질서와 정부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등 그들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와 세계정치질서를 위협하고 있다.¹⁴⁾

12) 최인섭, 앞의 책, 21면.

13) 趙炳仁, “유엔의 國際組織犯罪 團束戰略에 관한 研究”, 刑事政策研究, 제6권 제3호, 「韓國刑事政策研究院」, 1995, 53면.

14) Louise I. Shelley, “The Threat to World order”, Organized Crime, Greenhaven Press, Inc, 1999, p, 175.

2) 公務員의 腐敗 庇護 勢力化 및 公權力의 無力化

조직범죄는 범망을 피하면서 불법자금으로 공권력을 매수하여 공무원 조직을 부패시킨다. 조직범죄가 끼치는 가장 심각한 폐해는 불법수익을 활용한 공직매수라 할 수 있다. 주로 뇌물의 제공으로 이루어지는 공직매수는 조직범죄집단에게는 여러가지 부수적인 위험이 따르는 폭력적 수단보다 조직활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쓰여져 왔다.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활동의 성공 가능성은 극대화시키되 검거 위험은 극소화시키는 효율적인 투자로 인식되어 왔다. 공직매수가 수사기관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에까지 이루어질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수사나 재판 등에 있어 국민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 법치주의까지 흔들리게 된다. 결국 공직사회는 타성과 비효율이 조장되어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¹⁵⁾

특히 법 집행기관이나 수사기관과 결탁한 경우는 범죄조직과 공생하는 비호세력을 형성하거나 아예 공권력이 조직범죄의 주체가 되어 마침내는 사회 전체가 부조리의 온상으로 변하여 법치주의가 종말을 고하게 된다. 또한 이들 불법자금이 정치권, 언론계 등으로 유입되면 건전한 여론형성 및 판단기능을 마비시켜 버리기도 한다.

3) 企業活動 萎縮으로 인한 國家經濟 破綻

조직범죄는 경제적 이득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합법적인 재화와 용역을 불법적 방법으로 공급한다. 그 과정에서 이득의 극대화를 위하여 독점체제나 이에 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15) 유남식, 앞의 논문, 17면 ; 文永皓, “痲藥類 및 組織犯罪의 收益의 剝奪”, 「대검찰청·UNAFEI주제 공동 세미나 자료」, 1996, 97-98면 ; Lovise I. Shelley, *loc. cit.*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소위 ‘돈세탁’ (Money laundering)¹⁶⁾과 같은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처럼 국제조직범죄는 세금포탈, 돈세탁, 위장사업 확장 등으로 자금을 유지 관리하므로 자유경쟁의 경제 질서가 붕괴되고 부당한 경쟁영역의 확대로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경제를 혼란시키고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다.¹⁷⁾

4) 國家 信賴度 低下와 國家間 外交 紛爭 誘發

국제조직범죄 유형인 마약 밀반입의 증가와 남용으로 경제적인 피해 외에도 국민건강을 해치고, 총기류의 밀반입으로 살인·테러행위 등 강력 사건이 빈발함으로써 사회불안을 가중시킨다.

최근 러시아 마피아 등 구 소련 및 동구권의 범죄조직은 전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핵 물질을 밀거래하고 있는데 이들이 암거래 시장에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 물질량이 약 70kg 정도로 이는 핵폭탄 12개 제조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암살의 경우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도 96%의 성공보장, 기술적 준비, 암살자 엄호 및 도주 보장, 필요한 경우 암살자 비용까지 모두 망라하여 18만달러면 청부살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또한 화폐, 여권 등을 대량으로 위조·변조하여 유통시킴으로써

16) 돈세탁의 영어 어원인 “money laundering”은 우리나라에서는 ‘돈세탁’ 資金洗淨’으로 번역하고 있다. 미국에서 1920년대 알카포네와 같은 조직범죄자들이 도박이나 불법주류판매를 통해 얻은 불법수익금을 탈세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 자금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속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돈세탁이라는 용어 이전에는 불법금융거래(illegal financial transaction)가 돈세탁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1970년 미국의 은행비밀보호법의 입법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장준호, “90년대 돈세탁 : 국제적 추세 와 국내실태”,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9-21호, 31면 이하 참조.

17) 유남식, 앞의 논문, 19-20면.

18) 朝鮮日報, 1995년 11월 24일.

국가의 대외 신용도 저하를 초래하고 대외활동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⁹⁾

5) 地球村 全體에 대한 威脅

세계의 정치 체계를 규율하려고 할 때나 범세계적인 규범과 책임에 관한 어떤 원칙을 수립하려고 할 때 국제조직범죄에 의해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이단국가들은 국제조직범죄들과 서로의 편의에 따라 동맹체제를 맺어 이를 통제하려는 세계 국가들의 노력을 잠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마약의 유통망을 가진 조직범죄들은 대량살상무기 부품이나 기술의 유통망을 역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 사회의 구성조직, 사회구성원인 개인, 공공기관, 민주주의 가치와 민주화 등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²⁰⁾



3. 우리나라에서 摘發된 犯罪類型

그동안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국제조직범죄와 연루된 범죄유형들을 상당수 적발하였다. 그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麻藥去來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 것으로서²¹⁾ 마약류를 소지·소유·사용·수입·수출·제조·매매 등을 함으로써 국가적, 정신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천억불 규모의 마

19) 이치석, 앞의 논문, 17면.

20) 이치석, 앞의 논문, 19면.

21) 全經壽, 「麻藥犯罪搜查論」, 搜查研究社, 1995, 25면.

약이 거래되고 있으며 마약류 남용 인구 또한 2억 여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중남미 마약조직과 중국 마약조직 등이 상호 연계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는 등 국제조직범죄의 마약밀매 개입이 본격화되고 있다.²²⁾ 특히 중국이 마약 공급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가격상의 차이와 아편이나 헤로인 상용자가 약 200만여명으로써 당국의 단속도 어려워지는 등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²³⁾

또한 마약류의 경우 소량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과급력이 강하여 국제조직범죄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으며 그 밀반입과 유통은 <표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表 1>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년 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단 속	11	5	22	13	11	5	24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01.

2) 通貨 僞 · 變造

판매, 수출·입 유통 등을 목적으로 내·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 또는 은행권·신용카드 등을 위·변조하는 행위이다. 인쇄기술의 발달로 위폐도 점차 정교해져 육안 및 구형 위폐 감별기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초정밀위폐(일명 슈퍼노트)의 국내유통 증가로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있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국제조직범죄와 연계된 위폐단들이 외환위기 이후 외화유통이 자유로워진 것에 편승하여 새로운 위폐 세탁 기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위폐의 국내유통이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위조달러는 <표2>과 같이 1994년에 비

22) 국가안전기획부, 「21C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 1998, 50면.

23) 李泓, “東北亞의 재앙·北韓-中國産 필로폰”, 「月刊朝鮮」, 2001, 3, 366-371면.

하여 2000년도는 142건이 증가하고 있다.

<表 2> 위조달러 반입유통 단속현황

구 분 \ 년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건 수	25	15	41	29	158	173
단속 수량	294	491	189	251	412	212	188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01.

3) 旅券 僞・變造

밀매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여권을 위·변조하는 행위로서 최근에는 수요가 급증하여 국내는 물론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위·변조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며 위·변조된 여권으로 우리나라에 불법취업 등 국제조직범죄의 침투가능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표3>를 보면 1998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表 3> 여권법위반사범 단속 현황 (단위 : 건, 명)

연 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 속	불 구 속	기 타
1997	280	322	193	118	11
1998	439	504	320	175	9
1999	298	367	152	208	7
2000	477	557	293	254	10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01.

4) 密輸

해외교역 확대 및 개방화 정책에 따른 향락소비풍조 및 무분별한 외제품 선호경향은 각종 외제 호화사치품 및 소비재 밀수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다.

밀수 품목도 과거 금괴, 전자제품, 농·수·축산물 등에서 예술품, 야생동물, 산업폐기물 등은 물론 인체 장기까지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5) 武器 밀거래

우리나라는 총기류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무기류 밀반입 등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나, 동아시아의 조직범죄들이 주변국에 총기류를 대량 밀매하는 등 세력 확장을 기도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구 소련 및 동구권 붕괴과정에서 군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자 대량의 무기류가 불법유출 되고 세계 각지에서 밀거래된다. 우리나라도 <표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내·외 범죄조직과 연계된 전문브로커를 통해 외국 상선이나 화물선이 많이 출입하는 부산항 등 항만을 통해 암거래되는 있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반입·유통이 은밀하여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 밀반입과 관련하여 안전지대라 할 수 없다.²⁴⁾

<表 4> 밀반입 총기류 단속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 년 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건 수	8/9	6/8	4/18	9/37	2/5	4/4	5/5
압수 총기류(정)	13	7	7	12	2	4	7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01.

24) 국가안전기획부, 앞의 책, 144면.

6) 돈洗濯

범죄활동으로 조성된 자금을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행위로 수입의 존재, 불법적 출처 및 위법한 사용을 은닉하고 그 수입을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²⁵⁾

돈 세탁된 자금은 여타 불법행위로 수익의 증대와 종교·사회단체에 기부 등을 통한 세제상의 혜택을 취하여 위선적 행위로 범죄활동을 위장하기도 한다. 특히 통신수단의 발달로 수단이 정교화·신속화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7) 컴퓨터 犯罪

최근 컴퓨터 범죄는 컴퓨터 통신의 상용화와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운영체계에 대한 도전 등 복합적인 범죄 양상을 띄고 있으며 범행동기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해킹은 통신망의 발달과 인터넷 탐색의 용이성 등에 따라 국제적인 사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8) 신용카드 犯罪

전 세계가 신용사회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신용카드관련 범죄도 급증 하고 있으며 수법 또한 첨단화·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조직범죄까지 개입, 범죄양태가 국제화·조직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금액만도 연간 수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국제 문제화되고 있다.²⁶⁾ 그 대표적인 사례는 분실·도

25) 앞의 책, 194면.

26) 홍콩·대만·일본 신용카드 위조범들은 “한국을 봉”으로 여기고 있다. 2000년도 8천 만원이던 외국인 위조카드 범죄 피해액이 2001년도는 24억 2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고, 위조카드는 6장에서 5백 35장으로 급증하였으며 그 피해를 대부분 카드사가 보게 되면서 국제카드사간의 분쟁 요인도 되고 있다. 中央日報, 2001년 12월 4일.

난카드의 부정사용, 유명 가맹점의 카드현금 대출이나 매출전표 위·변조, 위조카드의 제조 등이 있다.

9) 密入國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안, 제주도와 인접한 중국의 산둥성·요녕성 등지에서 어선을 이용하여 무단상륙을 기도하거나 위조된 한국 입국사증을 이용하여 불법입국을 기도하는 등 밀입국이 늘어나고 있다.

<表 5> 밀입국사범 단속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건 수	45	71	104	120	59	86
인 원	488	809	1,399	303	288	1,172
(조선족)	(441)	(764)	(864)	(158)	(210)	(1,045)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 2001.



10) 其他 類型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갈취, 해외공사 입찰과 무역상담 개입 및 원한 치정 관계의 민사문제 해결 등 불법적인 행위는 물론 범죄조직 특성상 조직에 이익이 되는 모든 범죄가 행위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카지노 등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장소와 사용료를 갈취하거나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포함 원금을 회수하는 고리대금 활동도 포함된다.

그리고 매춘 목적의 부녀자 불법송출은 물론 원양어선 선원, 단순노무 등에 종사할 성인남자와 입양대상자로까지 범죄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第 3 章 동아시아 組織犯罪의 現況

국제조직범죄들은 마약, 무기밀매, 위폐 제조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를 자행, 국경을 초월한 활동 및 범죄대상국가 확보와 하부 금융조직 보유 및 합법·비합법 연계, 전략적 제휴, 국제정보시스템 이용,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 국제경기에 편승 불법이익 확보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²⁷⁾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비교적 국제조직범죄의 안전지대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사회통제시스템, 낮은 국제화 수준, 그리고 외국의 범죄집단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적 차이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범 국가차원의 국제화 전략추진, 지속적인 향락 산업의 번창 등은 국제조직범죄가 노리는 좋은 목표물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다.²⁸⁾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나 또는 그 영향력이 앞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조직범죄인 중국본토·홍콩·대만의 삼합회, 일본의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第 1 節 三合會(Triads)

Triads²⁹⁾는 중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자생해 온 범죄조직으로서 마피아나 일본의 야쿠자와 조직범죄로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대륙의 삼합회와 대만이나 홍콩의 삼합회가 서로 다른

27) 국가안전기획부, 앞의 책, 13면.

28) 李相植, “外事警察組織強化方案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1996, 38면.

29) Triads라는 영어의 어원은 현재 三合會의 조상에 의해 사용된 헤브루의 신비한 상징을 나타낸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강석, “삼합회에 대한 이해 및 우리의 대응”,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내부자료 참조.

양상으로 발달하였다는 점이다. 홍콩이나 대만의 갱단을 삼합회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반면에 중국본토의 갱단은 黑社會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삼합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홍콩이 1997년 7월부로 영국에서 중국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중국의 본토와 나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삼합회가 중국 공안당국의 수사를 피해 홍콩을 대거 이탈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 語源과 概念

1) 語源

삼합회의 기원과 용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1250년경에 만들어진 순수종교 집단인 백련교, 1644년에 창설된 라교 및 중국 청나라 시대의 비밀결사조직인 天地會³⁰⁾ 등의 후신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삼합회의 역사는 1674년경 청조를 전복시키기 위해 결성되었던 애국적인 비밀결사체에서 시작되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애국애족 단체에서 20세기초 중국 혼란기를 거치면서 공산세력에 대항하는 범우익단체로 중국 공산화 이후 홍콩의 경제성장과 부정부패에 기생하는 기업형 국제조직범죄로 변질되었다. 삼합회³¹⁾의 ‘三合’은 天·地·人의 合一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동양적인 완벽성을 추구함을 보여주고 있다.

삼합회는 긴 역사만큼 명칭 또한 다양한데 최초의 비밀결사체는 洪門(HUNG MUN)으로 알려졌으며, 그 이후 The Heaven and Earth Association, Sam Hop Wui, 또는 일반적으로 모든 삼합회 조직들을 총칭하는 의미로써 The Black Society Association 이나 黑社會(Hak She Wui)

30) 天地會는 洪씨 姓을 가진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고 하여 일명 洪무너라고 한다.

31) 초기 三合會란 용어는 영국이 홍콩을 지배한 후 삼합회의 범죄조직들이 天·地·人의 의미가 새겨진 깃발에서 발견되는 「‘洪’(비밀암호를 포함) 字를 둘러싼 삼각형(Triangle)」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불려지고 있다.

2) 概念

삼합회의 개념에 있어서 협의로는 新義安, 14K, 和記 등 홍콩에 근거지를 두고 삼합회의 특징을 띠며 중국 본거지의 大圈, 대만의 竹聯幫은 제외한 범죄조직들을 지칭하고 있다.

광의의 개념은 협의의 삼합회 외에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과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등 세계 16여개국의 Chinatown에 형성된 중국계 조직범죄를 지칭하는 것으로, 중국의 大圈, 대만의 竹聯幫, 뉴욕의 Flying Dragons, Ghost Shadows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일반적 의미의 삼합회에 해당된다.

法律上 定義로서, 홍콩의 「社團條例(Societies Ordinance)」와 「有組織及嚴重罪行條例 (Organized and serious Crime Ordinance)」에서는 ‘삼합회의 의식이나 그러한 의식의 일부나 그와 유사한 의식을 사용하는 단체 그리고 삼합회의 명칭을 채택·사용하고 있는 등 법령에 규정된 특징이 인지되는 범죄음모 단체’를 三合會(Triad Society)로 정의하고 삼합회의 의식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 관계 공무원에 의하여 활동이 금지된 단체를 不法社團(Unlawful Society)으로 규정하고 있다.

2. 三合會의 歷史的 變遷

1) 三合會의 神話와 傳說

삼합회는 비밀결사의 일종으로써 그 시조는 만주국이 明朝를 무너뜨리고 淸朝를 세운 17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反淸復明을 위해 결성되었던 GUNG MUN으로 볼 수 있다. 실제 淸말기 광서·운남성 등지에서 청조 타도를 위하여 여러차례 무장봉기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644년경 明朝가 붕괴되고 만주족에 의하여 淸朝가 세워진 이후 淸황제(Kang Hsi)는 중국 서

부지역에 침범하는 Sulu족을 막기 위하여 복건성 등에 위치한 소림사 승려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침입을 막아낸다. 그러나 너무 강력해진 소림사 세력이 왕조의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황제는 소림사 무승들을 해산하자 소림사에서는 이에 대해 격렬한 반발을 하였다. 이를 빌미로 무력진압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무승들이 살해되거나 처형되었으며 살아남은 소수의 무승들은 전국각지로 피신하는 신세가 되었다.³²⁾ 복건성 軍사령관은 소림사에서 쫓겨났던 승려 MA, Yee-Fuk의 배신을 이용하여 소림사를 급습하였다. 이때 탈출에 성공한 생존한 5명은 중국전역을 돌아다니며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청조를 전복하고 명조를 복위시키려 함으로써 이들의 HUNG MUN 제1대 선조로 알려지고 있다. 위 승려들은 목양(Muk Yeung)市에 본부를 두고 반청운동에 동참할 신참자를 모집하여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紅花亭(The Red Flower Pavilion)에서 의리를 맹세하였다는 점과 ‘紅’ (Red)字 발음이 명황제의 姓 ‘洪’ 字의 발음과 같다는 점을 착안하여 스스로를 ‘洪家’ (Hung Ka) 또는 ‘Hung Mun’ 으로 지칭하였다.

중국혁명기에 국민당군 정보부 곡신웅 小將은 1945년경 중국 광둥성 광주 Po Wah Road 14번지에 본부를 두고 중국 남서부 지방에서 활동중인 삼합회 등 각종 단체를 통합시킨 후 조직화·우익화하여 공산당 군에 대항한다. 그러나 1949년 국민당 軍의 패배와 함께 중국 본토지역의 삼합회가 대거 홍콩 지역으로 유입하면서 홍콩 삼합회의 주무대가 된다. 1953년 곡 장군의 사망으로 삼합회는 여러 조직으로 갈라져 독립한다. 그러나 1950-1960년대 홍콩의 비약적 경제발전으로 인해 이들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자연스럽게 지하세계의 범죄조직화함으로써 현재 의미의 삼합회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2) 홍콩에서의 三合會 歷史

1841년 영국이 홍콩을 식민지로 租借할 당시 삼합회는 이미 홍콩 내에 7,000여명으로³³⁾ 세력을 구축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여나갔다. 원래 삼합회

32) 염장호, 「세계조직범죄론」, 오성출판사, 1998, 204면.

계열조직이 아니었던 다른 범죄조직들은 내부 규율을 유지하고 삼합회의 의식 등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삼합회 조직이 되었다. 19세기 후반 당시 홍콩에는 300여개의 조직이 난립하였다. 1949년 중국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하여 수천명의 중국인이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로 유입되면서 1950년대 홍콩 삼합회 활동은 전성기를 맞이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홍콩정청은 1956년 대대적인 단속으로 삼합회는 활동을 거의 중지하고 홍콩 경찰도 삼합회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이에 적극 대처하게 된다.³⁴⁾ 1960년대 들어 홍콩경제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다시 무역·마약·도박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삼합회 조직이 재건되었으나 이전처럼 전체적 조직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지부(Office)중심조직, 거리폭력배(Street Gang)수준의 조직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3. 三合會의 文化

삼합회의 문화는 조직원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한 예식과 관습으로써 신참자는 입회식을 통하여 조직에 대한 全的인 충성을 맹세하고 삼합회의 역사와 법, 의리에 대하여 전수 받는 고유의식을 치른다. 그리고 상징시와 수신호를 사용하는 비밀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삼합회 사회의 일원이 된다. 이러한 의식들은 洪門의 제1대, 5대 선조들이 위험과 고난 속에서 소림사를 탈출 후 비밀 결사 활동을 하면서 겪은 상징적인 경험들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傳統入會式(Initiation Ceremony)은 새로운 조직원에게 조직의 역사와 규범을 교육시키고 신참자에게 형제로서의 의리를 맹세하게 하는 과정이다.

입회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의식으로 행하여진다. ① Muk Yeung市的 지도 및 선조들의 이름이 쓰인 기장 등으로 洪門의 제단을 장식하고 도구들을 배열하고, 5명의 선조를 경배하며, ② 의리를 배반하기보다는 죽겠다는 다짐

33) 조선훈, 「세계의 조직범죄」, 청목사, 1993, 119면.

34) 엄장호, 앞의 책, 210면.

을 의미로 칼로 신참자의 왼쪽 어깨를 두드린다. 그리고 36개의 서약과 21개의 규칙을 가르친다. ③ 향에 불을 붙인 후 향로에 꽂고, 언제나 형제가 되겠다는 맹세 및 부활을 의미하는 하늘·땅을 상징하는 Ring을 통과한다. ④ 갱(坑)과 두 개의 판자로 만든 다리를 통과하고 사발을 깨뜨리고, 닭의 목을 자른다. ⑤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찢러 피를 내며 황색 종이(草紙)를 태운다. ⑥ 紅花酒(The Red Flower Wine)을 마신다.(신참자의 피, 전통 중국술, 닭의 피 등을 섞어 만듦). ⑦ 제단 앞에서 8번 절을 하고, 신참자와 고참자가 서로 절을 하며, 신참자의 얼굴을 씻겨준다. ⑧ 삼합회의 시와 수 신호를 가르치는 의식을 치른다.

현대에 들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전통 의식을 단순화시켜 전통 입회식에서 기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의식시간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 절차는 洪門의 선조와 Muk Yeung시의 상징하는 기상 등으로 제단을 장식하며 조직의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신참자들과 조직간부들이 피를 내어 술과 섞어 만든 The Red Flower Wine을 마신 뒤 형제로서의 의리를 맹세한다.



4. 三合會의 組織構造

1) 傳統的인 組織構造

초기의 삼합회는 고유한 가문문장과 손가락을 이용한 신호, 충성서약과 같은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山主 또는 龍頭라는 두목이 있으며 그 밑에 副山主나 副龍頭가 있다.

조직내부의 결속과 신입회원을 환영하는 각종 의식을 관장하는 香主가 있으며,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새로운 지부를 결성하는 先鋒이 있다. 이들은 조직의 상층부를 이루면서 조직운영과 지휘통제와 같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선봉 밑에 있는 白紙扇은 조직의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이며, 紅棍은 조직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행동대장의 책임

을 지고 있다. 草鞋는 상부조직의 명령을 하부조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일반 조직원은 四九仔라고 불리며 정식으로 입단하지 않은 입단 대기자를 藍燈籠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각 계층에 따라서 행운을 암시하는 숫자가 각기 부여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조직 내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나타내기도 한다.³⁵⁾

조직원을 나타내주는 숫자는 보통 400대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두자리 숫자인 49는 포카판에서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는 무리수이기 때문에 쓰였다고 생각된다.

<그림1> 전통적 조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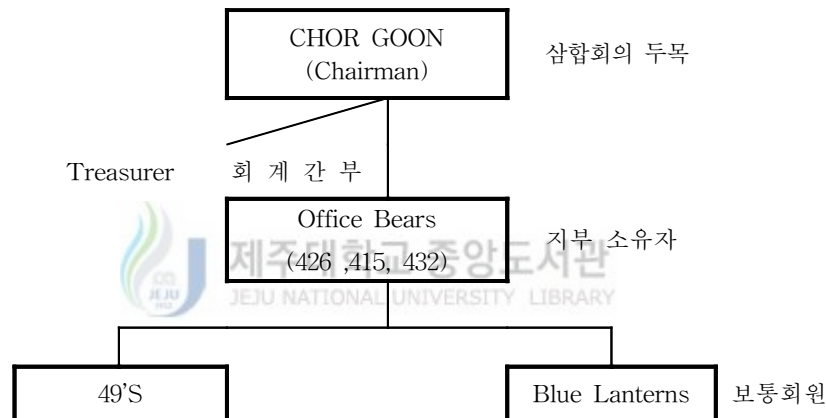
자료 : 염장호, 세계조직범죄론, 1998, 211면.

35) 염장호, 앞의 책, 211면.

2) 現代의 組織構造

오늘날 대부분의 삼합회 조직들은 초기에 비하여 단순화된 구조를 지녔으며 1~2년 간격으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회장(Chairman)과 지부소지자(426등급)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된다. 나머지 계급들은 명예직으로 부여 받고 공식행사에서만 일부 역할이 인정되고 지부를 소지하지 못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보통회원으로 전락한다. 또한 조직의 규율이 완화되어 개인적, 경제적 이유에서 탈퇴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림2> 현대의 조직 구조



자료 :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내부자료, 1999.

3) 組織 系譜

(1) 홍콩 삼합會의 起源

17세기 중반 ‘反淸復明’을 위하여 결성되었던 「洪門」은 중국의 각 지방에 분산하여 5개의 房(長, 二, 三, 四, 五房)으로 활동하다가 청조의 탄압으로 광동·광서성 지역에 근거를 둔 二房만이 명맥을 유지하였는데 홍콩·대만 등지의 삼합회는 여기서 유래되었다.

(2) 홍콩에서 活動중인 組織 系派

삼합회는 영국의 홍콩지배, 청조멸망, 중국 국민당의 패전, 2차 세계 대전 등 시대상황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는 분파를 계속하여 수백 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범죄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4 K(14K Triad)

1945년 중국 국민당 곡신웅 장군에 의하여 공산당에 대항하기 위한 범우익단체로서 출발하였으나 1949년 국민당의 패전으로 홍콩으로 유입된 후 토착 삼합회와 경쟁하면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14K는 홍콩을 거점으로 파라과이, 캐나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중국, 마카오, 대만, 필리핀, 태국 등에 45개의 조직과 2만4천명의 단원을 거느리고 있다.³⁶⁾ 오늘날 14K의 일부 회원들은 그들 스스로를 14K보다 ‘홍화단’(Hung Fat Shan)³⁷⁾으로 부르지만 보편적이지는 않다. 세계는 그들을 14K라고 부른다.³⁸⁾

② 新義安(Sun Yeeon)派

新義安派는 홍콩 최대의 조직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10여개의 소조직으로 4만여명의 조직원이 있다. 이들 조직은 원래 본토에서 활동하던 소규모 갱조직이었는데 홍콩으로 들어오면서 그 세력이 급속하게 강화되었다. 신의안派는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처음에는 갱과 같은 밀입국, 마약, 매춘, 도박 등 전문범죄조직으로, 나중에는 주식투자와 각종 벤처산업에 투자를 하는 등 기업중심의 조직형태로 바뀐다.

③ 和記派(Wo Group)

和記派도 10여개의 소조직으로 2만여명의 조직원이 있으며 밀입국,

36) 조선훈, 앞의 책, 124면.

37) ‘홍화단’의 이름이 지금의 14K로 불리게 된 것은 ‘홍화단’의 본부 주소 번지가 14번지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지배적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는 염장호, 앞의 책, 216면 참조.

38) 조선훈, 앞의 책, 126면.

마약, 매춘, 도박 등 범죄행위를 한다.

4) 三合會 組織의 特性

역사 및 조직계보에서 알 수 있듯이 삼합회는 경제적 수익을 찾아 끊임없이 분파를 계속해 나가고 소수의 지부소지자(Officer Bearer)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과두제 성격의 느슨한 조직(Loose-Knit Groups)이다. 조직원의 수가 계파에 따라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달하여 전체 삼합회원의 수는 8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나 통일적으로 관리·통제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5. 三合會의 活動 現況

1) 三合會 活動의 特徵

현대의 삼합회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면 합법·비합법을 구분하지 않고 관여하는 기업형 조직범죄라고 볼 수 있다. 조직 활동의 1차 목표는 금전획득이며 지역 및 세력권에 기반을 두고 조직원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살인, 상해, 협박, 공갈, 재물손괴 등 숙련된 범죄 수법을 이용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홍콩경찰에 의하면 홍콩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의 5~10%만이 삼합회와 연관되어 있으며, 조직범죄의 경우 70~75%가 삼합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2) 主要 系派 및 活動地域

현재 홍콩에서는 CHIU CHAU계열과 WO 계열, 14K 계열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침사초이(尖沙咀)·투엔문(屯門)·완차이(灣仔) 지역, 판링(粉嶺)·코울룬(九龍)·몽콕(旺角)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3) 活動領域

傳統的인 活動으로는 상점, 유흥업소 등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거나, 미니버스 등 수익성 높은 대중교통수단의 독점, 인테리어 사업의 독점, 고리대금업, 카지노 및 마작학원운영 등 불법도박, 마약밀매, 매춘 알선 및 포르노그래피 사업에 관여해 왔다.

最近에 있어서는 UN산하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소속의 한 전문가는 “삼합회 조직들은 전 세계에 걸친 그들의 지하세계 연결망을 활용해서 중국인들을 서방세계로 밀입국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활동을 통해 연간 35억 달러(약 4조 2천억원)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약 50개 정도의 삼합회 조직들이 전 중국인 밀입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8, May 1995).³⁹⁾

그리고 벤츠, 도요타 등 고가차량을 절취 또는 절취된 차량을 구입하여 중국, 동남아 지역 등에 대량으로 차량 밀수·밀매를 하고 있다.⁴⁰⁾ 또한 아시아 무역·금융의 중심지로써 수많은 회사와 은행의 본·지점이 위치하는 홍콩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령회사 및 은행계좌를 통한 마약, 무기밀매, 도박자금을 유통·환전 처리하는 등 Money Laundering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익성이 좋은 CD 및 신용카드 위조사업에 관여하였고, 최근에는 인터넷상 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여 신참자를 모집한 사례가 있다.

39) <http://www.safekorea.net/webzine/contents/sp.../sp01-02-4-1.ht>

40) 한국인 26명은 전국에 4개의 지부(서울·경기·호남·영남)를 두고 구매선으로 부터 차종과 운행거리·연식 등을 지정해 주문을 받은 뒤 그에 맞는 차를 골라 최근 3년간 벤츠 등 고급승용차 130여대(시가 42억원)를 절취하여 중국 판매 총책이며 三合會 간부인 조선족 김모(44) 와 연계하여 중국·필리핀·몽골 등에 밀수출 한 것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적발하였다.

中央日報, 2001년 12월 25일자 참조.

6. 臺灣系 三合會

일반적으로 삼합회라는 용어는 홍콩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갱 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대만의 조직에서는 幫派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幫派組織은 과거 한족중심 비밀결사의 후신이지만 점차 그 성격이 변질되어 조직범죄단으로 전락하였다. 이들은 대만내의 유흥가·안마 시설소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돈이 되는 사업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상인조직으로 위장하여 보호비를 뜯어내고 있다. 일부 조직은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건축공사에 담합입찰로 불법행위를 하기도 하고 국제적인 마약거래에도 깊게 관여한다.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에는 四海幫, 竹聯幫, 天道盟, 松聯幫과 같은 4대 조직 이외에도 芳明館, 豬屠口, 飛鷹 등의 조직원 1,215명이 활동하고 있어 가장 많은 幫派조직원이 있는 곳으로 확인되었다.

1) 사해방(四海幫)

사해방은 중국공산화를 계기로 대륙에서 탈출한 外省人⁴¹⁾들이 조직한 최초의 대만 폭력조직으로 타이베이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1955년 국민당 정부의 간부와 부유한 상인들의 자제들이 대만대학에 모여 피를 나누는 의식을 가지면서 본격적이 출범이 시작되었다.

2) 죽련방(竹聯幫)

비대만출신의 대륙인들이 설립한 조직으로써 가장 잔인하다. 죽련방의 전신이 中和幫인데, 텃세가 심한 대만의 본토박이 깡패들에게 대응하겠다는 차원에서 결성되어 1956년부터 中和幫이 竹聯幫, 三環幫, 萬字幫의 세조직으로 분리되었고 이 중 죽련방이 가장 큰 조직으로 성장하여 중화방의 정통 계승자가 되었다. 현재 죽련방은 경호업과 도박장, 기업체운영, 청부살인, 밀

41) 대만에서는 중국 본토에서 탈출한 사람을 外省人라고 부른다.

입국, 입찰담합과 같은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3) 송련방(松聯幫)

송련방은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대륙인을 중심으로 조직이 결성되어 군인가족이 많이 살았던 송산 지역의 松基, 婦聯 등의 마을 주민 백여명이 모임을 가진 것이 시초로 알려지고 있다. 1986년과 1987년 사이에 타이베이시의 동부지역을 순식간에 장악하면서 본격적인 세력확장을 하고 몇 년만에 대만의 4대 폭력조직으로 자리잡는다.

4) 천도맹(天道盟)

천도맹은 다른 조직이 비대만계 출신자로 구성되는데 반발하여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역사가 짧고 감옥에 투옥되었던 동기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폭력조직이다. 이 조직은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복권사업과 매춘업, 카지노와 마약 밀수 등에도 개입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고, 왕성하고 체계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활동도 개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7. 中國의 黑社會

일반적으로 중국 본토의 폭력조직은 17C 청나라 시대에 생성되었는데 공산정권 통치하에서도 소규모 조직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중국정부는 삼합회라는 이름 이외에도 黑社會, 黑幫, 幫會, 幫派라는 여러 가지 이름을 통칭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 활동중인 폭력조직은 주로 흑사회나 흑방으로서 각 활동지역에 따른 명칭의 상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삼합회는 중국·홍콩·대만을 중심으로 50여 개 조직에 20~30여만 명⁴²⁾이 활동 중이며

42) 국가안전기획부, 앞의 책, 29면.

90년대부터 진출을 시작한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파나마 등을 중심으로 97년 홍콩반환이후 해외에서의 불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⁴³⁾ 특히 유 지나 당 고위간부, 공안원, 지역의 토호들이 흑사회의 두목이 되어 비밀리에 암약하는 사례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으며 재산범죄나 주가조작, 불법 도박업 개입과 같은 첨단화된 범죄수법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낙후된 성에서는 흑사회가 사법권이나 민사개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執法隊라는 친위대를 만들어 자신들의 조정안이나 해결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응징하고 있다.

미국·프랑스·독일·벨기에 등 미주 및 유럽지역 30여 개국에서 현지 화교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이민알선·여권 위·변조, 마약밀매 등 각종 범죄를 자행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마약산지인 태국·미얀마 등 ‘황금의 삼각지대’ 생산 마약의 판매망을 장악하고 있다.

第 2 節 러시아 마피아 (Russian Mafia)

1. 마피아란 말의 由來

여러가지 유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말의 유래로는 13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섬 서부농촌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기원은 농지관리인과 그 하수인을 총칭하여 부르는데서 유래되었다.

어원상으로는 첫째, *Mazziui Antorizza Furti, Incedi, Avvelenamueuti* (마치아가 절도, 방화, 독살의 권한을 준다)의 첫 자를 뺀다는 설, 둘째, *Morte Francia Iealia Auela*(이탈리아인이 프랑스인에게 죽음을 외친다)의 첫 자를 뺀다는 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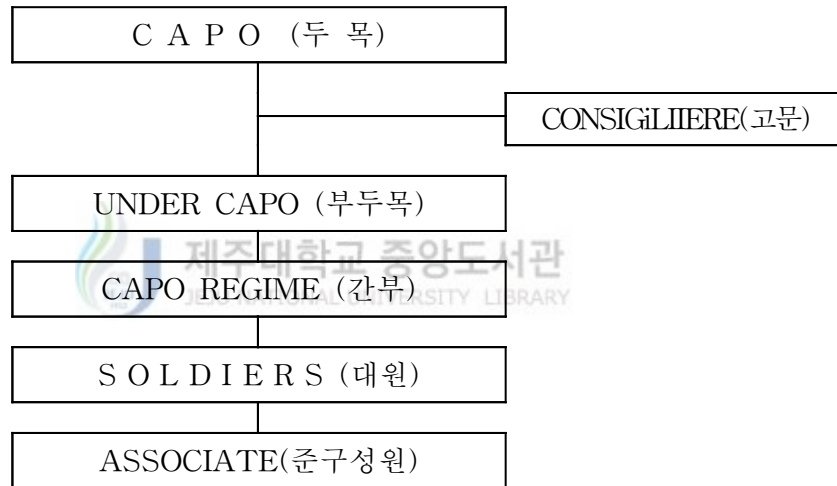
43) 영국비밀정보부는 ‘조직범죄 및 삼합회 담당 조사국’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등 각국은 삼합회의 자국 침투 차단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마피아 범죄는 1865년 팔레르모에서 행해진 불법 장물아비 공판 기록에서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마피아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사용된 것은 1875년 이후이다.⁴⁴⁾

2. 마피아 組織의 特徵

마피아조직의 특징으로는 오메르타(복종과 침묵의 규칙), CAPO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그림3> 마피아 조직의 내부 체계도



자료 : Frank Schmallegger, PH.D, "Criminology Today" , New Jersey, prentice hall, 1996, p.357.

<그림3>에서 각 직책별 임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CAPO는 이탈리아어로 '하나' 라는 의미로 패밀리의 두목을 지칭한다.

CONSIGLIERE는 두목의 조언자란 말로, 여기서는 은퇴한 노령의 보스들이 많고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44) <http://saejo.pufs.ac.kr/~italy/italia/storia/mafia.htm>

UNDER CAPO는 두목의 명령을 전달한다든지 스스로 부하에게 범죄를 명령하는 중간 책임자이다.

CAPO REGIME란 원래 ‘100명의 대장’ 이란 뜻이나, 실제로는 수명으로부터 15명 정도의 대원을 거느리고 대원의 소두목으로 위치한다.

SOLDIERS는 하부구성원으로 범죄 등으로 얻은 돈의 일정 비율을 간부에게 바치고 그 조직에의 상납금에 의해 조직 내의 서열이 정해진다.

ASSOCIATE는 패밀리와 영향하에 보스를 위해 범죄를 감행한다.

1) 마피아와 이탈리아의 犯罪組織

프란체스코 코시가 이탈리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이탈리아는 정부가 아닌 마피아가 지배하고 있다” 고 토로한 바 있다. 그만큼 이탈리아의 마피아는 통제불능에 이를 정도로 커져 있다.⁴⁵⁾

현재 이탈리아 마피아는 1,800여명 규모로 자금원은 마약거래 20%, 공공사업 18.5%, 강도·절도 30%, 사기 10%, 담배밀수·밀매 5%, 자릿세·상점·기업에 대한 공갈 10% 등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경제활동 규모는 30조 리라에 달한다.⁴⁶⁾ 돈세탁 루트는 스위스 은행과 시칠리아 은행이 있다.

(1) 마피아

이탈리아의 범죄조직 중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서 조직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며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구성원들은 기능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개별적이고 가족적이며 공포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통적인 조직인 시칠리아 마피아는 정부가 약해졌을 때에 시민들에게 그들의 권위를 부각시킴으로써 커왔고 농업에서 공업으로, 지방 및 국내적 차원에서 국제적차원의 조직으로 변신하였다. 세력은 180여 개 조직에 5,000여명이며 시칠리아 소작농 중심으로 생성하였다.

45) 조선훈, 앞의 책, 24면.

46) 국가안전기획부, 앞의 책, 40면.

(2) 카모라 (Camorra : 외투)

19세기 나폴리의 형무소 안에서 생겨나 초기의 폭력 신디케이드에서 최근 기업 신디케이드로 변모하여 현재는 130여 개의 패밀리와 6,300여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수입은 담배와 마약의 밀수이다.

(3) 누드랑게타 (N Drangheta)⁴⁷⁾

이탈리아 남부도시 레조와 칼리브리라 지역을 기반으로 18세기부터 과일 채소류의 유통에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1960년대 이후 대형 공공사업에도 진출하여 현재는 150여 개 패밀리와 5,200여명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수입원으로는 마약, 무기, 귀금속 등의 밀수 등이 있다.

2) 마피아와 美國의 犯罪組織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미국의 동부도시로 이주해온 시칠리아 출신의 범죄자들과 그 후예들이 조직한 Black Hand Societies에서 유래하여 금주법 시대를 거치면서 그 세력을 현저히 신장시켰다.⁴⁸⁾

(1) 라 코자 노스트라 (La Cosa Nostra : 우리들의 것)

193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루카니아에 의해 형성된 ‘라 코자 노스트라 커넥션’이라는 집단지도체제에서 유래하였다. 세력은 전국적으로 약 2만 명에 이르며 주요 조직으로는 뉴욕의 5대 패밀리라고 불리는 보난노, 감비노, 제노베세, 루케치, 콜로보가 있으며 최근 6번째로 새로운 가족인 Pupie Gang이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조직은 ‘범죄의 비폭력화’, ‘살인

47) N Drangheta란 칼라브리아 지방의 방언으로 그리스어의 ‘안도라가도스’를 어원으로 하는데 곧 ‘용기 있고 교활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 말은 18세기 말경 세미나라(seminara)의 경찰이 작성한 공문서에서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7세기 이탈리아의 통일과 영토분쟁, 부유층과 소작농간의 전쟁에서 이 말이 등장한다.

48) 국가정보연수원, 앞의 책, 182-183면.

의 최소화' , '평의회결정의 준수' 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⁴⁹⁾

(2) 멕시코 마피아

1959년 쿠바혁명 당시 망명한 쿠바인들이 CIA의 카스트로 축출작전을 위해 조직되었다가 1961년 피그만 사건으로 해체되어 마약시장에 잠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상호협력이 잘되는 5개 주요 콜롬비아 범죄가족이 있다. 마약소득과 콜롬비아인들이 경영하는 투자회사가 주요 수입원이다.

3. 러시아 마피아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 중 우리나라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범죄단체는 러시아 마피아라 할 수 있다. 러시아 마피아는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공권력 이완과 경제질서 문란을 틈타 정부재산의 민간불하 과정에서 각종 이권이 개입하면서 과거 공산당 관료, KGB요원, 군장성 등이 조직적인 대규모 단체를 만들어 검은 돈을 벌어서 새로운 부르주아 계급을 이루고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진출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200개가 넘는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며 전통적으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소수민족끼리 인종중심의 마피아가 존재해왔다. 러시아 마피아는 '존재는 있으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뿌리깊은 해악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마피아는 사람 그 자체일 뿐 아니라 관행이나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⁵⁰⁾ 구 소련 전역을 장악하는 통일된 조직은 없고, 도시별·민족별로 조직되는 경향이 많으며 상호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업무상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1) 모스크바 내 他民族 系列⁵¹⁾

(1) 아르메니아계

49) 염장호, 앞의 책, 52면.

50) 안택원, 「시장과 마피아」, 장원, 1993, 72면.

51) 국가안전기획부, 앞의 책, 26면.

아르메니아의 정치·경제적 곤경으로 모스크바로 불법 이주한 약 15만 명의 아르메니아인 중에서 5백여명이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있다. 표면화된 8개 그룹은 마약, 절도 및 비행기 납치 등이 전문이다. 이들은 러시아 및 여타 CIS국가⁵²⁾들의 유력 정치가 및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을 매수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2) 아제르바이잔계

모스크바에 5백여 명으로 현재 14개 소그룹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직은 10~60명 단위의 소그룹으로 활동하면서 마약거래 및 호텔·레스토랑·상점 등에서 보호비를 갈취하고 있다. 이밖에 외환·자동차 암거래, 자금세탁, 장물 및 무기 밀거래 등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3) 다게스틴계

타민족의 범죄조직 하수인에서 독립하여 크라스노다르스키야, 노브고로 은행관련 경제범죄에 주력하고 있다. 자동무기와 헬기 등으로 무장하여 절도나 강도 등 범죄행각을 일삼고 있는 조직이다.

(4) 그루지야계

현재 약 1,200여명 규모에 50여 개 조직으로 대규모 절도나 강도, 인질 납치전문, 마취제와 무기를 밀거래하고 있다. 특히 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이스라엘 등지내 그루지아 이민 집단과 연계하여 활동중이다.

(5) 잉구세티아계

250여명 규모에 나즈라노브스카야 약 150명이 주로 재정이나 경제영역 범죄가 전문이다. 그로즈니의 약 70명은 도난자동차 거래 및 인질 납치 몸

52) 독립국가연합(CIS)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로루시, 몰도바,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등 구소련연합 11개국 (91년 소련붕괴후 결성)을 말한다.

값요구를, 말고백 약 30명 그룹은 보호세 강탈이 전문으로써 각 분야별로 3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나즈라보스카야 조직은 재정과 물질 및 인적 자원을 잉구세티아 공화국에서 지원하고 있다.

(6) 타타르계

200여명 규모에 2개 조직이 활동 중이며 카잔이 본거지이다. 유흥업소나 상점 등으로부터 보호세 강탈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7) 체첸계

3,000여명 규모의 조직으로서 모스크바 내 민족그룹 가운데서 세력이 가장 강한 그룹으로 범죄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 권부와 연계하여 경제 분야와 재정부문 범죄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보호세 강탈이나 절도, 마약, 자동차 암거래, 매춘 등의 활동도 한다.

2) 모스크바 內 러시아 系列



(1) 발라쉬킨스카야(BALASHIKHINSKAYA) 조직

1980년대 초부터 존재해 왔으며 200여명 규모에 29개 하부조직으로써 조직 두목간 서열이 존재한다. 이 조직은 자동차, 마약, 무기거래, 보호세 강탈, 국가재산 절도 등을 범죄행위를 자행하며 행정기관이나 사법공무원을 매수하고 있고 태국과 유럽, 미국과도 연계하고 있다.

(2) 돌고프루드넨스카야(DOLGOPRUDNENSKAYA) 조직

약 200여명 규모에 3개 하부조직으로 군에서 절취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도나 보호세를 강탈하고, 청부살인 등으로 잔인성으로 악명이 높다. 이들은 유럽과 홍콩 등지와도 연계중이다.

(3) 이즈마일로프스카야(IZMAJLOVSKAYA) 조직

1980년대 청년단체가 모태이나 세력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절도,

강도에서 경제 범죄로 업종을 전환하여 활동중이다.

(4) 유베레스카야(LYUBERESKAYA) 조직

약 150여명 규모로 10개 하부조직에 절도, 마약이나 무기거래, 도난 자동차를 밀거래하고 있다. 독일, 이스라엘, 헝가리와도 연계중이다

(5) 포돌스카야(PODOLSKAYA) 조직

1980년대 중반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약 500여명 규모로 20여명의 소두목이 있고 자동무기로 중무장하였으며 강도와 미국으로 원정하여 청부살인 범죄행위도 자행한다.

(6) 푸쉬킨스카야(PUGHKINSKAYA) 조직

1980년 중반부터 활동중이며 250여명 규모에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자동차무기나 최첨단 과학 장비에도 능통하다. 도박, 카지노, 장물처리, 가짜 주류와 위조예술품 판매에도 개입하고 있다. 특히 두목 AKOP YUZBASHEV(일명 PAPA)는 권부와 연계되고 있다.

(7) 솔츠세브카야(SOLNTSEVSKAYA) 조직

250여명 규모에 3개 하부조직으로 모스크바 서부지구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독일과 중국과도 연계되어 활동한다. 또한 사법기관과도 연계하여 청부살인 등의 범죄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한다.

(8) 타간스카야(TAGANSKAYA) 조직

1989년경부터 100여명 규모로 자동차무기로 중무장하여 절도, 마약에서 유흥업소경영, 귀금속 밀수를 전문적으로 한다. 체첸그룹과 라이벌 관계이며 CIS국가와 연계되어 있다.

3) 연해주 地域⁵³⁾

(1) 사할린 마피아

사할린 지역 마피아는 간부만 약 250명으로 러시아계 외에 한국계·중국계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홈스크, 꼬르샤꼬브, 네빌스크 등 지역별 마피아 조직이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 중이고 이중 홈스크 마피아가 가장 세력이 강하다. 주요활동으로는 주정부나 치안기관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기업에 범정일자 이외의 고리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불법수익을 얻고 있다. 또한 선원증, 여권 등을 위조하고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중고차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아편 거래와 시장과 공장, 항구 등지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이 조직 중 특이한 것은 홈스크 마피아의 총책임자가 한인교포 2세로 한인교포들이 주요 간부직을 차지하고 있다.

(2) 로스토프 마피아

국경도시라는 지리적인 여건상 마피아간 경쟁이 심화된 지역으로서 민족별로 마피아가 형성되었다. 1990년 초반부터 선교사, 기업가 등의 한국인이 진출하기 시작하여 현지에는 체첸계 마피아와 연계하여 코리아 백화점 한국 타이어 회사 등을 설립하였다. 이들의 주요활동으로는 정치적 테러 활동을 지원하고 무기거래와 각종 밀수행위를 자행하며 기업체를 직접 운영한다. 세력규모는 700여명 규모로 체첸계가 200여명으로 가장 세력이 강하며 고려계, 러시아계 각 200명, 기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중국 마피아가 각각 100여명이 활동 중에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로스토프시 검찰, 경찰, 국회의원 등이 모두 마피아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3) 나호드카 마피아

나호드카는 한국 등 동남아 국가와의 무역 전진기지로 이용되는 항구도

53) 국가안전기획부, 앞의 책, 28면.

시로서 도시의 특성상 군수물자 밀매와 외국과의 무역을 둘러싸고 마피아조직간 각축을 벌리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은 주로 군인들과 연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한국, 일본, 홍콩 등 동남아 지역과의 차량, 원목, 식품 등 수출입 업무를 하면서 VAKH호(1,522톤)등 선박 5척을 보유하고 있다.

(4) 아르츨 마피아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중앙아시아 마피아들과도 친교를 유지하면서 지역 경찰서 간부들과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목사들이 아르츨에 진출하여 선교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부 목사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마피아에 보호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주요활동으로는 레스토랑, 기업체, 공장 등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며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의 군부 마피아와 연계하여 핵 물질 및 군수물자를 밀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 모스크바 마피아

모스크바에는 대·소규모의 마피아 조직이 산재해 있으나 이중 가장 세력이 강한 마피아는 체첸계 마피아로서 엘친의 친위부대였던 '알파' 부대의 배후 조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파' 부대는 부대원 3,000여명을 보유한 특수부대로서 마피아를 동원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마피아 조직으로부터 수익의 50%를 상납받고 있다.

4) 韓國系 러시아 마피아

1900년대 초와 일제시대에 시베리아나 흑룡강성 등지로 이주한 상당수의 한인 후예들이 러시아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범죄단을 조직 활동하고 있다. 한국계 마피아 조직은 소련의 붕괴와 함께 극우조직과 손을 잡고 전위대 역할을 하면서 고위 공직자와 사업가들의 해결사 역할을 하며 잔인한 활동으로 소수 조직이면서도 대규모 조직으로의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들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블라디보스톡과 캄차카반도, 하바로프스크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

으나 극동지역의 최대 마피아 조직으로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⁵⁴⁾

4. 러시아 마피아의 實態⁵⁵⁾

1) 麻藥問題(Drug Trafficking)

러시아는 그 면적이 대단히 넓기 때문에 마약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약100만ha 정도의 면적에서 대마초가 재배되고 있다. 이렇게 재배된 대마초의 가격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서 Moscow에서 1kg당 약50\$ 정도의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같은 가격은 서유럽 지역에서 판매되는 대마초 가격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다. 러시아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약종류는 헤로인(Heroin)과 아편(Opium)이다. 거의 대부분의 헤로인이나 아편이 아프카니스탄에서 생산된 것이며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Tajikistan)이나 우즈베키스탄(Uzbekstan),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등의 국가를 거쳐 러시아로 유입된다.

2) 組織의 大規模 擴張

최근 들어 러시아 마피아의 상승세가 엄청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 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세계적인 조직범죄단에 필적할 정도의 무장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인 러시아와 구 동구권 국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3) 武裝力 擴大

러시아 마피아가 경찰이 가지는 무장력을 능가한 지 이미 오래전이다. 러

54) 엄장호, 앞의 책, 274면.

55) 앞의 책, 256-258면.

시아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2만2천여 개의 기업이 불법적으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대포나 지대공 미사일, 탱크와 같은 군사용 중화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마피아간의 전쟁은 권층단계를 벗어났으며 최소한 자동화기로 무장한 상황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4) 國民들의 思考方式

미국과 이탈리아의 국민들이 마피아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이라면 러시아 국민들은 호의적이지는 못하더라도 마피아에 대한 적개심은 가지고 있지 않다. 러시아 마피아들은 방송연예사업이나, 위성방송, 통신, 조선업, 중화학공업, 무기산업, 용병산업, 무역업과 같이 대자본이 필요한 부분만 건드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5) 政治集團化



마피아들은 의원 선거에 직접 후보를 내는 등 정치집단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러시아 국회의원은 살인죄의 범인이라도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하지 못한다. 그만큼 국회의원은 절대적인 신분보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전국구 의원 제도가 있어 안정순위에 들기 위한 마피아 보스들간의 경쟁은 치열하다. 또한 공산당을 비롯한 중·소규모의 정당들은 정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구의원 자리를 공공연히 팔고 있다. 최소한 50만 불 이상의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나돌 정도로 의원직의 판매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러시아 의회 의원 중 약 10~15%정도가 마피아 조직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30%정도는 간접적으로 마피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러시아 마피아의 國內事業

러시아 마피아는 구 소련의 체제하에서 국제적으로는 밀수와 불법송금이 있으나 지금에 와서는 군수물자는 물론 핵무기까지 판매하는 세계적인 범죄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미국정부나 인터폴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 마피아의 마약거래가 아니라 핵무기와 핵물질 거래이다. 구 소련에 있던 3만 여기의 핵무기 중 1만5천여 기는 이미 폐기된 상태이지만 아직도 존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수천 개의 핵무기가 구 소련 전지역에 산재해 있다. 이들은 새로운 시도로 컴퓨터분야에도 뛰어 들고 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유통의 30%이상을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증권거래 조작이나 금융망 조작을 통한 돈세탁과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5. 主要 活動 狀況 56)

1) 政治的 테러·暗殺 및 請負殺人

구 소련이 중앙집권체제에서 15개 공화국으로 분리되면서 지역과 민족 간 상호 배타성으로 분류가 끊이지 않는다.

같은 지역·민족내부에서도 각 과별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마피아를 개인사병으로 흡수하여 테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이들 마피아들은 청부살인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2) 貿易會社 등 各種 企業體의 直接 運營

자체적으로 무역회사 등을 설립하여 각종 경제관련 법률 미비를 이용한 뒤 세금포탈, 밀수, 외화의 불법유출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56) 國家情報研修院, 앞의 책, 187-189면.

러시아 세법상 차량의 경우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00%관세가 붙어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는 점을 이용, 러시아에서는 한국 등지에서의 중고차량 밀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마피아가 조직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구 소련에서 가장 큰 군수공업지대인 서부 우랄지역에서 알루미늄과 인공위성 및 로켓에 사용되는 특수강재, 특수시약에 대한 수출이 제멋대로 확산되면서 모스크바의 對 마피아 조직이 관련 공업회사 장악에 나서고 있다. 또한 1,500개의 국영기업체와 400개 은행을 포함하여 4만여개의 기업을 장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⁵⁷⁾

3) 會社들에 대한 保護, 統制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세법에 의하면 정식 등록된 회사는 이득금의 94%를 세금으로 바쳐야 하고, 나머지 6%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야하므로 적법절차에 의한 상행위시 회사는 파산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는 이익금의 20~30%를 정부가 아닌 마피아에게 바치고 마피아로부터 각종 탈법행위를 도움 받고(세금포탈, 밀수, 위조공문서 발급, 채권해결 등) 있는 실정이다.⁵⁸⁾

4) 情報 通信 分野

새로운 시도로 컴퓨터분야에도 뛰어들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유통의 30%이상을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대규모 증권거래조작이나 금융망 조작을 통한 돈세탁과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57) <http://russia.kcm.co.kr/society/mapia.html>

58)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대기업의 경우 마피아 조직을 자기 기업 안으로 흡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5) 企業마피아

러시아에는 유난히 많은 사설 경호업체⁵⁹⁾들이 있으며 그 종사자수는 미군 상비군(52만 4879명) 규모를 능가하고 러시아 연방의회 안보위원회는최근 사설 경호회사가 2만 5천 개를 넘고 있으며 약 80만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 경비부문이나 사설경호업체들은 무장세력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범죄자체를 생업수단으로 하는 범죄조직인 마피아와는 구별된다.

6) 其他 活動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동남아국가와 동유럽 국가들의 기생관광업체 및 범죄조직과 연계, 신문과 방송에까지 공개적으로 처녀들을 모집 매매하고 있다. 이들은 처녀들을 외국에 매매시 1인당 1,500~3,000달러의 소개료를 받고 자국의 관할지역내 매매의 경우 월보수의 50%를 갈취한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이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역의 마피아가 아편 등 각종 마약 생산을 장악하고 있다.

6. 러시아 마피아의 膨脹 原因⁶⁰⁾

1) 治安不在 및 公務員의 腐敗(Corruption of Officials)

러시아 정부의 예산이 모자란 가운데 증가추세에 있는 범죄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는 등 치안부재가 마피아의 팽창 원인 중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러시아의 등장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범죄조직으로부터 뇌물을 상납 받는 등 부패한 공무원의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59) <http://russia.kcm.co.kr/society/mapia.html>

60) 염장호, 앞의 책, 259-264면.

2) 軍人 失業者의 양산

러시아는 기존의 냉전체제가 붕괴하면서 과도하게 많은 군 감축으로 인해 수십만의 군인들이 졸지에 실직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마피아는 이들이 가장 좋은 직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많은 수의 군인들을 좋은 보수를 미끼로 조직으로 편입시켰다. 퇴역군인들의 마피아화는 이미 러시아에서 큰 사회 문제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문제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經濟的 不況과 共產主義의 沒落으로 인한 價値觀 混亂

러시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 마피아들은 경제적인 불황이 발전의 호기이기 때문에 이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 전망된다. 그리고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의 러시아 연방공화국 탄생을 계기로 러시아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관과 도덕을 동반자살과 같이 순식간에 무너뜨렸으며 별다르게 이를 대처할 만한 사상이나 정신이 나오고 있질 못하는 상황이다.

4) 拜金主義的 社會 霧圍氣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변화는 기존의 사상 중심적 사회체제에서 경제중심적 사회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러시아인들의 배금주의가 팽배해 가는 분위기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5) 外國組織의 大舉流入

러시아 마피아와 이탈리아 마피아의 상호제휴와 일본의 야쿠자와 홍콩의 삼합회 같은 조직들도 러시아로 밀려들어 러시아의 값싼 마약을 구입하여 소비지로 이동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 여기

저기에 산재해 있는 중고 무기류를 구매하여 內戰地域으로 파는 무기 밀매업에 손을 대기도 한다.

6) 광활한 領土

러시아의 마피아가 잘 뿌리뽑히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끝없이 광활한 영토에서도 쓸모없이 많은 평원지방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지트를 요새화하거나 아예 시베리아와 같은 곳에 근거지를 만들어 쉽게 적발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7. 러시아 마피아의 國際化

러시아 마피아는 빠른 기동력과 순발력을 가지고 자체적인 범죄수요를 충족시키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그 조직규모를 세계시장에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이들은 철저한 비밀유지원칙을 갖고 있을뿐더러 많은 수의 공무원을 조직원으로 삼고 있으며 러시아내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마피아들로 하여금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 해외무역에도 개입하여 러시아에 풍부한 석유와 가스 등의 자원 수출은 물론 식량, 신형 중고차 수입도 하고 있다.

미국·캐나다·영국·이태리·콜롬비아 등지로 세력을 확대하여⁶¹⁾ 중국 삼합회나 일본의 야쿠자, 미국·이태리 마피아, 남미 범죄조직 등 국제조직 범죄와 연계하여 마약·무기밀매, 매춘, 인신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마약조직과도 연계, 동남아 마약 생산국과 미국·유럽 각국 등을 연결시켜 주는 한편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 연계 러시아 첨단무기와 남미 산 마약류를 구상무역 형식으로 교환하고 있다.⁶²⁾

61) 약 50여개국에서 200여개 조직이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국가안전기획부, 앞의 책, 22면 참조.

62) 엄장호, 앞의 책, 264면.

第 3 節 야쿠자(Yakuza)

야쿠자⁶³⁾는 마피아, 삼합회와 더불어 세계 3대 폭력조직으로 불리고 있는 세계적인 범죄조직이다. 일본의 역사를 배경으로 활동을 벌인 이들 야쿠자조직은 일본제국주의의 하수인 노릇부터 시작해서 히로뵤의 전세계 공급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벌여왔다. 특히 동남아시아를 제2의 전진 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필리핀이나 태국 등의 국가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1. 야쿠자의 形成

1) 初期의 야쿠자

150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 일본에는 가부키모노(歌舞仕者;미친놈들)라는 불량청소년 집단이 있었다. 이들은 기이한 행동과 이상한 복장을 하고 긴칼을 차고 행인들을 상대로 행패와 칼로 베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산적이나 해적·마적단과 같은 형태로 많이 변화하였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마을을 집단적으로 습격하는 일을 주업으로 삼았다. 이들의 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각 지방의 유지들이 야코(町奴)라는 자경단을 만들었다. 일본의 야쿠자 기원을 야코와 가부키모노에서 찾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부류를 전부 다 야쿠자의 기원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⁶⁴⁾

63) 일본의 반사회적 폭력조직에 속하는 자를 일반적으로 야쿠자로 통칭하는데 야쿠자란 ‘돼지’, ‘惡漢’, ‘無用之物’ 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 경찰에서는 야쿠자를 ‘폭력단’ 이라고 부르고 있다.

64) 엄장호, 앞의 책, 160-161면.

2) 近代的 意味의 야쿠자

(1) 데끼야(的屋)

일본 야쿠자의 직접적인 기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데끼야로서⁶⁵⁾ 야시(春具師)라고도 불린다. 데끼야는 우리나라의 裸負商과 같은 떠돌이 행상집단이라는 학설이 보편적이다. 이 집단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江戸時代 후반 약품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자질구레한 소품 즉 치약, 화장품 등을 도로변이나 길거리에서 혹은 호별방문을 통해 판매하던 자들이 일종의 동료집단을 결성했던 데에서 비롯된다.⁶⁶⁾ 이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물건 판매와 전국의 소식을 돌아다니면서 전달하는 언론인 역할도 하였다. 데끼야는 상설시장이나 어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물건거래와 시장에서 열리는 도박판까지도 관리하고 있었다. 데끼야의 무리들이 늘어나면서 행상인 집단간에 자신들의 이익과 보호를 위하여 오야붕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하였다. 오야붕은 그의 부하들을 지배하여 자기영역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상권을 장악하고 가게의 배정과 특정 상품의 이용까지도 통제하는 한편 가게의 사용료와 보호금을 받았다.

(2) 바쿠토(博徒)

바쿠토는 일본 중세시대의 전문적인 길거리의 노름꾼들로서 대로변과 읍내중심으로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바쿠토는 도박꾼으로서의 행동과 당시 많은 노임을 지불해야 하는 상인들이나 공사책임자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노임을 다시 빼앗고자 바쿠토에게 청탁하면 공사판 노동자와 부두가의 짐꾼 등 상대로 도박을 하고 이들의 돈을 거의 다 끌어 모았다.

65) 데끼야들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원칙인 “다른 조직원의 아내를 범하지 않고, 조직의 비밀은 목숨을 바쳐 지킨다. 상하관계는 정확하게 지킨다.” 를 行動綱領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지금의 야쿠자가 가지고 있는 원칙의 기원이라 할 수도 있다.

66) 尹翊, “日本 暴力組織의 實態와 對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釜山大學校 大學院, 1992. 25면.

바쿠토는 비밀업수와 꼬봉과 오야봉의 계급체계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특히 上命下服의 철저한 일본식 사고방식은 바쿠토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야쿠자’라는 명칭은 바쿠토들이 화투판을 벌일 때 가장 나쁘게 나온 패를 부르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일본 조직범죄단의 공식명칭으로 바뀌게 된다. 바쿠토가 주로 하는 화투놀이는 각 게임자에게 3장의 화투장을 나누어 주고 이 3장의 끝 자를 모두 합하여 가장 끝 자의 숫자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3장을 합한 숫자가 20이 되면 끝 숫자가 0이 되기 때문에 최악의 수로 불려 졌으며, ‘8·9·3’ 패를 야쿠자라 불렀다.

바쿠토의 도박판에서 야쿠자는 사회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자기 자신들을 비관하면서 붙인 이름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야쿠자는 대부분 토지가 없고 돈도 없으며 살아갈 집도 없는 사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19세기까지 바쿠토를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사용되던 호칭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데끼야나 기타의 범죄조직의 공통된 칭호로 널리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3) 現代的 意味의 야쿠자(쿠렌타이 : 遇連隊)

바쿠토와 데끼야는 고전적인 의미의 야쿠자라고 하면 쿠렌타이는 현대적 의미의 야쿠자이다. 쿠렌타이는 대단히 폭력적이고 목적달성을 위해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격성을 지니고 있다.

쿠렌타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군국주의적이고 과거 지향적이며 價値喪失한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돌아와 밤거리와 시장 등 도시변화화를 중심으로 모여 형성된 기형적인 집단이었다. 쿠렌타이는 암시장에서 PX물건의 독점판매와 상인들로부터 자릿세를 받는 것을 주수입원으로 삼으면서 성장하였다. 쿠렌타이의 등장은 일본 조직 폭력계의 일대 역학구조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기존의 야쿠자들은 칼이나 손도끼·각목과 같은 무기를 주로 사용하였지만 쿠렌타이는 총기를 가지고 무장하기 시작하였고, 범죄대상도 다

른 조직이나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가해졌다. 구렌타이도 組단위로 호칭되며 그 신분은 조장, 간부, 회원으로 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는 젊은층들이 주축이 되어 완력과 재력으로 의형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야쿠자의 文化

1) 야쿠자 入團式

야쿠자의 조직을 이끄는 총책임자를 오야붕(親分)이라 하고, 오야붕의 밑에서 조직과 오야붕을 위해 범죄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꼬붕이라 한다. 이러한 꼬붕은 입단식을 거쳐야 정식으로 꼬붕이 된다.⁶⁷⁾ 한편 오야붕과 꼬붕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특수한 관계이지만 혈연의 관계가 아니고 입양 관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립된다. 이 입양 관계는 특정일을 선택하여 ‘도리모치닌’이라는 사회자의 진행 하에 오야붕과 기존 야쿠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직에 가입하고자 하는 꼬붕과 오야붕이 술잔을 나누어 마시는 의식을 가짐으로써 입양하게 된다. 술잔에 들어 있는 사케(술)는 신분에 따라서 다르다. 두 사람의 관계가 부자가 아니라 동급의 형제 관계인 경우나 두목 들끼리의 조약을 맺는 경우에는 잔에 부어진 술의 분량을 같게 한다. 기타 여러 가지 의식이 존재하는데 각기 가족 내의 위치를 세심하게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⁶⁸⁾

67) 입단하는 꼬붕에게 이후의 의무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는 오야붕이 주신 잔을 받았고 오야붕 또한 너의 술을 마셨으니 이제 일가와 너의 오야붕에 대한 충성을 바칠 의무가 생겼다. 처자들이 굶주리고 너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더라도 이제는 일가와 오야붕에 대한 너의 의무가 앞서는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죽을 때까지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한다. 오야붕은 너의 유일한 아버지이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를 따라야 한다.”

68) 조선훈, 앞의 책, 60면.

2) 背信者에 대한 處罰

(1) 유비쓰메(斷指意識)

유비쓰메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오야붕에 대한 충성의 의미로 자신의 손가락을 손도끼로 자르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조직범죄단이 손가락을 자르도록 시킨 것은 칼이나 도끼와 같은 흉기를 제대로 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배신한다는 야쿠자의 원리에 따라 이들이 오야붕에게 칼을 들고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손가락을 자르도록 한 것이다. 자른 손가락은 비단 천에 싸서 오야붕에게 바쳐졌으며 오야붕은 이 손가락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신뢰를 斷指者에게 주었다.

유비쓰메 의식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1년 일본검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야쿠자 조직원 중 42%가 손가락을 잘랐으며, 전체의 10%는 적어도 2번 이상 손가락을 자른 것으로 조사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⁶⁹⁾



(2) 追放

바쿠토는 오야붕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직을 배신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가하였다. 가장 가혹한 것은 죽음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무서운 것이 조직으로부터의 축출이었다. 한 조직에서 축출되면 즉시 그 사실이 주변의 바쿠토 조직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도 발붙일 곳이 없었다. 야쿠자는 자신의 조직을 배반한 자를 추방하면 그 내용을 적은 엽서나 서신을 전국의 조직에 널리 배포한다. 이것을 본 다른 야쿠자조직은 절대로 추방된 자를 조직원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3) 文身(Tattoo)

야쿠자들은 조직 가입희망자의 인내심과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시험하고 야쿠자로서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는 입장에서 신체의 일부 또는

69) 앞의 책, 66면.

전신에 문신⁷⁰⁾을 새기는 특이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바쿠토나 데끼야 같은 폭력조직들은 각 조직원의 참을성과 인내력을 시험하는데 이 문신을 사용하였다. 문신을 보다 크고 아름답게 그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그림을 몸에 지닌 사람에 대한 경외와 존경이 남달랐다. 오늘날의 야쿠자들은 73%정도가 문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같은 내용은 문신이 야쿠자의 신분을 얼마나 잘 나타내 주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3. 야쿠자의 變遷 過程

여기에서는 일본의 근대적인 개혁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明治維新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야쿠자들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1) 明治維新~도야마(富山) 時代

메이지 정부가 근대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야쿠자도 개혁과 경제성장의 체제에 몸을 맞춰가기 시작한다. 일본의 근대화는 항만시설의 확장과 새로운 유럽식 건물의 대량 증축에 따라 야쿠자들은 공사장이나 항만에 인력을 제공하고 사용자와 노동자들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소개료를 받아 챙기는 식으로 근대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일본의 군국주위는 사무라이(武士)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막부체제의 부패와 무능함은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사게 되어 당시 九州지방의 사무라이들이 주동이 되어 반란이 일어났으며 그 영향은 전 일본열도를 강타하였다.

70) 文身이란 몸에 잉크를 바른 침으로 찔러 뱀, 호랑이, 용 등 그림이나 여러 가지 문형을 박아놓는 것을 말한다. ‘嬉遊笑覽’이라는 일본문헌에 보면 이미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부터 惡小輩들이 몸에 고기나 용, 선녀, 구신, 수목, 꽃 문자 등을 문신하는 버릇이 있었으나 도요토미가 집권했던 시대까지는 야쿠자 사회에 문신은 없었으며 가네야라는 관동협객의 팔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글자를 문신한 것이 일본야쿠자 문신의 처음이라 했다.

이 반란에 가담한 도야마⁷¹⁾라는 사무라이는 자신의 근거지인 북해도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를 규합하여 그 지역을 장악하는 범죄단으로 키운다. 도야마는 그간 자신이 세력을 하나로 합쳐 국가에 충성하고 국왕에게 몸을 바치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玄洋社’라는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불응하는 자는 폭력으로 응징할 것을 결의하였다.

야쿠자의 발전은 당시 군국주의와의 결합을 가장 큰 장점으로 하고 있었으며 군국주의 멸망으로 인해 범죄 집단으로 몰락하게 된다.

2) 1920년대 ~1930년대

1920년대는 天皇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아 계속적으로 적대 세력을 하나씩 제거해 갔으며, 1919년 대 일본 국수회의라는 전국규모의 극우폭력단체를 만들어 일본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기에 이른다.

1930년대는 일본이 중국과 대동아 전쟁을 치르는 무장 군국주의 절정기이다.

이 시대에 도야마는 일본정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자신을 추종하는 야쿠자조직을 식민지에 대대적으로 파견하여 농지개량사업에 야쿠자가 개입하여 대량의 토지를 일본정부소유로 바꾸어 놓았다.

3) 1945년 ~1954년대

1945년 이후에는 종전직후의 혼란기를 거쳐 경제의 개혁이 이루어진 시대이다. 데끼야와 바쿠토 이외에 구렌타이라는 새로운 범죄조직이 전쟁 후에 생겨난 시기로서 이들 3자는 암시장의 지배, 히로뽕 밀매, 도박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하게 되고 이러한 이권을 확보하고자 서로 간에 세력다툼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경찰의 중점 단속은 암시장과 히로뽕에 대한 단속에 있었다.

71) 도야마는 10대에 고구마장사를 하다가 20세에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교시사’라는 일본 극우주의 단체를 조직하여,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이 조직에 참여하였으며 점차 그 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그리고 자신의 불우했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빈민들과 거지, 고아들을 돕는데 앞장섰다.

4) 1955년 ~1965년대

데끼야, 바쿠토, 구렌타이 간의 대립과 이합·집산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단체에 흡수되거나 관습을 모방하기도 하여 이들간의 활동면에서는 차이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1955년 이후에는 3자를 일괄하여 ‘暴力團’ 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관행화되었다.⁷²⁾

이 시기에는 가두폭력사건과 보복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었다. 또한 山口組 와 稻川會 등의 일부 폭력단이 보다 넓은 지역으로 진출을 꾀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의 세력다툼 사건과 다른 폭력단을 흡수하여 점차로 그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특히 山口組는 메이유카이(明友會)사건⁷³⁾을 계기로 대판에 진출하는 등 1960년부터 1964년동안 21府縣에 그 세력을 확대했다.

1957년에 소위 뱃부(別府)사건⁷⁴⁾이 발생하는 등 폭력사건이 대규모화·악질화의 양상을 보였다.

1964년 말 이후 조직의 수령 및 간부의 검거를 중점으로 한 제1차 정상작전을 추진하고 다수의 단체, 조직을 해산, 파멸시키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5) 1965년 ~1974년대

제1차 정상작전에 의해 검거되어 복역하였던 두목급 등이 출소하면서 조직이 부활·재편되었다. 또 다시 대규모 폭력단에 의한 조직화와 계열화의

72)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2000년도 일본경찰백서 번역본」, 2001, 30면.

73) 1960년 8월, 山口組가 大阪 미나미의 강패와 영토를 둘러싸고 대립관계에 있던 明友會를 습격하였다. 山口組는 이 사건을 계기로 大阪진출을 이룩했고, 그 후 山口組가 조직적으로 각지에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

74) 1957년 3월 오오이따갱(大分縣)의 대규모 폭력단끼리 別府온천관고아 산업대 박람회의 이권을 둘러싸고 대립하여, 양 단체 모두 현 내외에서 다수의 후원단체의 응원을 얻어 수회에 걸쳐 권총, 일본도 등을 사용한 대규모의 대립혈투사건을 일으켰다. 이 대립혈투사건 과정에서 시의회의원 살인사건, 신문사 습격사건이 발생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흥기소지집합죄 등의 신설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움직임이 강해지자 자금원에 대한 단속 강화로 중소폭력단은 괴멸되고 대규모 폭력단을 풍속영업, 부동산업, 토건업 등의 기업경영을 주된 간판으로 하는 등 자금원의 다양화를 꾀하고 상납금제도를 확립하는 등에 의해 단속에 의한 타격을 교묘히 면하고 중소폭력단을 흡수해서 그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또 교통사고의 합법, 채권추심 등 시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거래에 개입·관여하고 위법, 부당한 이익의 획득을 꾀한 민사개입 폭력단 등을 통해서 폭력단이 시민사회에 침투하는 징조가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폭력단의 광역화·계열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대립항쟁 사건도 다시 격증하여 1970년에는 129건을 기록했다.⁷⁵⁾

6) 1975년~1984년대

경찰의 단속으로 야쿠자 수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특정 대규모 조직은 그 세력을 오히려 신장시켜 나갔으며 민사개입폭력과 기업대상 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야쿠자의 자금원 활동은 보다 더 한층 다양화되고 교묘화되었다. 1981년 7월 山口組의 3대째 조장인 다오까가 사망하고 1982년 2월에는 그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최고 간부가 급사하는 일 등으로 인해 山口組 내부에 상당한 동요가 발생하고 후계조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2개 파로 분할되어 싸우게 되었다. 그 후 1984년 山口組의 4대 조장으로 다께나까가 무리하게 결정됨으로써 이 조직은 분할하게 된다.

4대조장에 반발하는 일부는 새로운 조직인 이찌와가이(一和會)를 결성하여 山口組와 대립하게 되었다. 특히 해외에서 총기, 각성제 등 금제품의 입수처로서 거점 만들기 등을 동기로 삼은 폭력단의 해외활동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75) 전국경찰에서는 폭력단 범죄수사 전담원을 배치해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특정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과 모방범죄 방지를 위한 많은 府縣에서 「폭력 110번」 등을 설치해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통보연락 루트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 등의 보호활동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 보호계를 설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활동을 추진했다.

7) 1985년 이후

1985년에는 4대째 山口組조장이 일화회계 소속의 폭력단원들에 의해 사살된 것을 계기로 하여 양 단체간의 대규모 세력다툼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일화회의 해산으로 결말을 보았다. 그 이후 山口組는 1989년 4월 5대 조장으로서 와다나베 요시노라(渡邊)를 결정하고 조직 내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등 그 세력 확대를 더 한층 견고히 하였다.

한편 기업대상 폭력과 민사개입 폭력도 계속적으로 증대하였다. 버블경제의 시기에서는 都市部에서 지가상승을 배경으로 ‘땅값 끌어올리기’ 등 부동산거래에 개입하거나 ‘재테크’ 붐을 배경으로 호황이던 증권거래에 연루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안도 발생했다.

1997년 8월에는 고오베(神戸) 시내 호텔에서 山口組 두목이 권총으로 사살되자 각지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총기발포사건이 연이었다. 그리고 폭력단의 해외활동이 활발해지는 한편 해외범죄조직이 외국인 노동자 등을 발판으로 일본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폭력단과 관계를 맺고 외국인의 불법취업 알선, 약물 밀수, 도박 등을 자금책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폭력단 종합대책요강’, ‘폭력단 해외정보센터설치’⁷⁶⁾, ‘폭력단원에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⁷⁷⁾ 제정으로 광범위하게 규제하였다.

8) 近年의 경우

전통적 자금획득범죄에 의해 점하는 비율은 감소추세이나 1999년은

76) 暴力團 海外情報센터는 1987년 5월 경찰청에 폭력단의 해외진출이 활발해 가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그 실태를 장악함과 더불어 해외의 수사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로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폭력단 진출이 현저한 미국 및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연휴 강화에 힘쓰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77) 暴力團對策法은 民事介入暴力, 對立血闘 등 폭력단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시민생활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립혈투시 사무소 사용제한 명령이나, 종래의 형벌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유형의 폭력적 요구 행위 등에 대한 중지명령의 행정적 조치를 행정적 조치를 위하여 제정되어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42%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특히 기업대상폭력은 1997년 3월에 대형식품회사에 관계되는 상법위반 사건을 비롯하여 계속적으로 같은 사건이 검거되고 있었다.

1997년 8월에 발생한 山口組 對 中野會 대립혈투에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총기발포 발생회수가 1999년까지 12도부현에서 39회로 증가하였고,⁷⁸⁾ 1999년 6월에는 山口組 對 國粹會의 대립혈투사건에서는 폭력단체대책법 시행 후 처음으로 사무소 사용제한명령이 발효되었다. 또한 국제범죄조직과 폭력단이 손을 잡고 불법입국에 끼어 범죄를 감행하고 방일 외국인의 조직 절도사건에 관여하거나 중국인그룹을 사용한 강도 등의 흉악 범죄를 일으키거나 하고 있다.

4. 야쿠자의 組織現況과 原理

1) 야쿠자의 實態

야쿠자 構成員 및 準 構成員⁷⁹⁾은 1999년 말 현재 약 83,100명으로 1998년에 비하여 약 1,800명(2.2%)이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구성원은 43,900명으로 1998년에 비하여 약 400명(0.9%)이 증가했다. 또한 山口組, 稻川會 및 住吉會의 3개 구성원은 약 3만 300명으로 1998년에 비하여 약 600명(2%)이 증가하였다.⁸⁰⁾

2) 組織의 解散·壞滅 및 檢舉 狀況

1999년에 해산하거나 또는 괴멸된 조직은 208조직(구성원수 약 1,380명)으로 이 중 山口組, 稻川會 및 住吉會의 3개 조직의 영향하에 있는 조직의 해산 및 괴멸 수는 161조직(구성원 수 약 1,090명)이고, 전체의 77.4%(전 구성

78)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앞의 책, 83면.

79) 準 構成員은 구성원은 아니지만 폭력단체와 관계를 가지면서 그 조직의 위력을 배경으로 폭력적 불법행위를 하는 자, 또는 폭력단체에 자금이나 무기를 제공하는 등으로 그 조직의 유지와 운영에 협력하거나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80)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앞의 책, 182면.

원수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검거상황으로 1999년 검거인원은 32,511명으로, 1998년에 비하여 474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구성원의 검거인원은 10,584명으로, 1998년에 비하여 31명(0.3%)이 감소하였다⁸¹⁾.

<表 6> 폭력단 구성원 및 준 구성원의 검거인원 (단위 : 명)

연 차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폭력단 구성원 등	33,436 (12,922)	33,011 (11,699)	33,270 (11,803)	32,109 (10,746)	32,985 (10,615)	32,511 (10,584)
그 중, 山日組	14,046 (5,425)	14,274 (5,120)	14,512 (5,314)	14,715 (4,876)	15,093 (4,913)	15,511 (4,946)
그 중, 稻川會	5,140 (1,804)	4,570 (1,804)	4,787 (1,629)	4,559 (1,454)	4,601 (1,504)	4,306 (1,616)
그 중, 住吉會	4,530 (4,530)	4,317 (4,317)	4,317 (4,345)	4,118 (4,118)	4,131 (4,131)	4,216 (4,216)
3단체 합계	23,716 <70.9>	23,161 <70.2>	23,644 <71.1>	23,392 <72.9>	24,635 <74.7>	25,037 <77.0>
	9,213 <71.3>	8,307 <71>	8,697 <73.7>	7,921 <73.7>	7,920 <74.6>	8,086 <76.4>

자료 :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2000년도 일본경찰백서 번역본, 2001.

- 注 : 1. 폭력단 구성원 등이란 폭력단 구성원 및 준 구성원을 나타낸다.
 2. ()안은 폭력단구성원을 말하고 < >안은 구성원의 총 검거인원에서 차지하는 단체 구성원 및 준 구성원의 검거 인원 구성비를 나타낸다. 그리고 3단체 합계중 < > 上은 구성원 등이고 下는 구성원이다.

3) 야쿠자의 現況(暴力團 指定狀況)

2000년 2월 10일 현재 25단체가 指定暴力團⁸²⁾으로 지정된 가운데,

81) 앞의 책, 182-183면.

82) 指定暴力團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경찰이 집중단속대상으로 하고 있는 악질적

1999년은 2대째 히로시마 및 3대째 후쿠오카 등 6개 단체가 3대째 대물림 지정을 받았다. 또한 1999년 7월에 야마구찌구미로부터 절연처분을 받은 오사카, 2000년 2월에 2대째 북박회(福博會)가 각각 지정을 받았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4대 야쿠자조직에는 야마구치구미(山口組), 스미요시카이(佳古會), 이나가와카이(稻川會), 아이스코데츠(會律小鐵)가 있다.⁸³⁾

(1) 야마구치구미(山口組)

야마구치구미는 동경, 북해도, 대판울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약 3만명의 조직원을 가지고 있는 일본 야쿠자의 최대 계파이다. 원래 야마구치구미는 1915년 야마구치 하루요시(山口春吉)가 고베(神戸)항의 항구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불량배를 모아 만든 폭력조직이 기원이었다. 다오카 카츠오는 3대 조장으로 선출된 후 야마구치구미의 절대성을 확립하였고 특히 동경도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영역에 다른 조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확고부동한 체계를 확립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전성기를 누리면서 일본 내 제1의 야쿠자 조직으로 떠오르게 된다. 야마구치파의 조장인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현재까지도 야마구치파를 이끌면서 급진적인 조직 확장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조직과의 심한 마찰을 빚고 있으며 수십 차례의 총기사건을 그가 직접 주도하였다.

(2) 이나가와카이(稻川會)

이나가와카이는 신흥 야쿠자조직으로서 현재 일본에서 2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동경도와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약 9천에서 1만명 정도의 조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나가와카이는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가족계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계자손이 세습적으로 오야붕의 지위를 이어받고 있다. 이나가와카이는 규모가 작으면서 조직운용에 융통성을 지니고 보다 철저한 규율과

이고 대규모적인 폭력단을 말한다.

83) 염장호, 앞의 책, 182-184면.

긴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바쿠토, 즉 노름꾼 출신 회원들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도박을 주 수입원으로 삼고 경마조직, 고액의 카지노경영 및 해외도박여행 등이다.

(3) 스미요시가이(住吉會)

스미요시가이는 1958년 요코하마 항구에서 인부들의 오야붕 노릇을 하고 있던 아베시게사꾸(阿部重作)가 항구주변에서 그를 따르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스미요시파를 만들면서 발족하였고 현재 동경을 중심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 7월 니시구찌 시게오(西口茂南)가 회장으로 취임한후 1991년 2월 住吉會로 개칭하였고 8,200여명의 조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미요시가이가 다른 야쿠자 조직과 다른 점은 최고 오야붕 밑에 있는 중간 오야붕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강하다는 점이다. 조직 내의 권력분산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일종의 연합회(Syndicate)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미요시가이는 400여년이란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운영이 상당히 세련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 중세적 조직운영으로 철저한 계급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4) 아이스코데츠(會律小鐵)

아이스코데츠는 새롭게 떠오른 신흥 야쿠자조직으로서 일본에서 4번째로 큰 규모로서 이 조직의 최고 오야붕은 한국인이다. 현재 교토(京郡)와 시카켄을 중심으로 활동중이고 한국교포를 장악 마약과 도박, 매춘업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약 3,000여명의 조직원을 가지고 있으며 철저한 기업형 사업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조직의 오야붕인 재일 교포 강모는 1997년 1월 8일 69세의 나이로 오야붕 자리를 내놓고 2선으로 후퇴한 일본 최초의 오야붕이 되었다. 그의 은퇴는 야쿠자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제시한 것이어서 야쿠자는 물론 일본경찰에까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 組織 原理

마피아의 조직을 패밀리(Family)라는 명칭으로 부르듯이 야쿠자는 ‘조(組)’ 나 ‘회(會 : Society)’ 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여기서 ‘組’ 란 소규모 야쿠자 조직을 일컫는 말이며 ‘會’ 란 두 개 이상의 야쿠자 조직이 모여 만든 일종의 범죄연합(Syndicate)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본의 야쿠자 조직을 지칭할 때에는 소사이어티(Society)라고 용어로 사용된다.

야쿠자의 조직은 크게 4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⁸⁴⁾ 최고위 조직운영자로서 ‘오야붕’ 이 있고, 그 밑에 고문의 역할로 ‘사제’ 가 있다. 그리고 고참 구성원을 ‘아니키’ (큰형), 오야붕(親分)의 부두목 구실을 하는 ‘약두’ 가 있고 하부조직원으로서 ‘꼬붕’ (子分), 신참을 ‘샤케이’ (동생)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중세 봉건적 가부장제를 모방한 조직형태를 강하게 띠고 있다.

오야붕과 꼬붕의 관계는 절대적인 上命下服으로서 지시사항 불복종과 금기사항을 위반시에는 조직내부로부터 런치, 손가락 자르기, 관계단절 등의 혹독한 응징을 받게 된다. 반면에 보스와 간부급들의 명령을 따르고 조직의 발전에 공헌한 자는 인사와 경찰 조사과정에서 소속 집단의 사실을 부인시 그의 변호사 비용과 복역 중 생계비 지급 등 상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1) 組織의 擴張과 連帶

대규모 조직의 확장 및 연대의 동기는 하위연대조직 및 구성원으로부터의 더 많은 기부금(조노킨)모금과 금전 확보상 효율성의 증대 그리고 경쟁 조직에 대한 우위확보로서 군소 조직들은 대규모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 대규모 조직의 막대한 영향력을 배경으로 작은 조직들은 안정된 자기 영역과 자금 확보의 높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上·下組織間의 關係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있어서 20%에 약간 못 미치는 하위

84) 염장호, 앞의 책, 181면.

조직들이 그들의 상부조직으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같이 사업을 하고 50%정도는 그들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상부조직에 의한 하부조직의 자금 확보 활동에 대한 간섭이 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부조직은 하부 조직의 인사 등 기본적 문제에는 깊이 간섭하지만 개별적인 경제 활동에는 깊이 간섭하지 않는다.

(3) 組織 集團 相互關係

조직범죄집단의 보스와 간부들은 상호간의 영역을 보장하기 위하여 친목회를 결성하는 예가 많다. 대규모 조직의 경우는 그들의 힘을 사용해서 불법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금원인 자기영역을 확장 및 보호하기 위하여 쟁탈전을 벌이기도 한다.

이러한 집단은 다양한 형태의 기리가케 모금행위 체도를 이용한다. 그 중에는 ‘차기 보스의 승격’, ‘장례식’, ‘의형제 혈맹식’, ‘출감 구성원에 대한 축하’ 등이 있다. 이러한 기리가케는 공중과 집단에게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시행된다.



5. 야쿠자의 活動領域

조직범죄단은 특정 담당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담당지역은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터전이고 일정한 자금수요를 충족하는 곳이다. 구역의 크기는 야쿠자의 파워와 보스의 권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것 때문에 조직범죄단은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집단과 충돌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1) 傳統的인 資金源 活動⁸⁵⁾

(1) 麻藥 밀거래

마약밀매거래 수익이 야쿠자 연간 수익의 34.8%인 약 4백53억5천만 엔

85) 조선훈, 앞의 책, 92-93면.

에 이르고 있어 조직범죄 단체에서 마약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다. 최근 이들은 대만·홍콩 등에 본거지를 둔 국제적인 약물범죄조직과 결탁하여 일본에 밀수입하고 밀매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분확인이 필요치 않는 통화료 선불방식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여 구입자와 직접 면접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밀매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 표 7 > 야쿠자에 의한 각성제사범의 검거인원의 추이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폭력단원의 검거인원	6,329	7,377	7,911	7,817	7,204	7,944
구성비(%)	43. 2	43.1	40. 7	39. 6	42. 7	43. 4

자료 :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2000년도 일본경찰백서 번역본, 2001.

(2) 馬券業 및 私設福券業

마권업은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경기를 중계시설을 통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설 마권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마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을 판돈으로 걸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한번에 수천만 엔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의 사설 마권을 발행하여 이중 상당액을 차익으로 챙기고 있다. 사설 복권업도 상당수의 복권 판매비가 조직으로 흘러 들어간다.

(3) 其他 類型

연예사업 운영자 등으로부터 보호명목의 금품, 사례비, 이권개입 수수료 등 부당하게 돈을 뜯어내고 있다. 또한 운영자들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강제 구매나 상품임대를 하기도 한다. 또한 구슬치기, 포카, 화투, 빠짱꼬, 카지노 등 대부분을 야쿠자들이 관리하고 있다. 도박업이 다른 사업보다 야쿠자들에게 좋은 이유는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지역으로 진출하여 대규모의 카지노를 신설하고 있는 상

황이다.

2) 새로운 形態의 資金源 活動

(1) 民事事件 介入

교통사고의 해결, 부동산의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문제, 채권거래 등의 당사자들 중에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교섭을 보기 위해 폭력단을 이용하는 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개입이 더욱 조장되고 있다. 민사개입 폭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땅값 상승을 배경으로 한 부동산 가격조작 등에서 특히 대규모화되었고, 폭력단은 이들 사안에 관여하여 거액의 불법이익 획득을 도모한다.

(2) 總會꾼⁸⁶⁾ 등에 의한 企業對象 暴力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 행위에 의해 막대한 자금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소 주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말썽을 일으키거나 사회운동을 표방하는 깡패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 행위도 자행하고 있다.⁸⁷⁾ 폭력단은 주권 행사에 이권을 빌리거나 사회운동이나 정치 활동을 가장하고 표방하는 등 합법적 행위를 위장하면서 기업을 곤경에 빠뜨려 막대한 불법 이익을 획득하고 있다.

(3) 金融 · 不良債券關聯事犯

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에 관여하여 부정하게 자금획득을 꾀하고 있는 상황도 현저하다.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공적금융제도에 얽힌 사기, 출자법 위반사건 등의 용자과정과 관련 있는 것도 두드러지고 있다.⁸⁸⁾

86) 총회꾼은 ‘소카야마’, ‘금융사기꾼’, ‘총회조작꾼’, ‘그림자의 검은 신사’, ‘빌려온 깡패들’ 등 여러 별명이 있다.

87) 1999년중의 총회꾼 및 사회운동 등을 표방하여 벌인 범죄는 531건에 831명이다.

88)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앞의 책, 187면

< 표 8 > 금융, 불량채권 관련 사범의 검거상황 추이

구분 \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총수(건)	38(18)	107(55)	172(79)	214(85)	198(102)
용자과정	6(5)	15(4)	21(2)	23(11)	33(18)
채권회수과정	13(13)	56(51)	87(77)	107(74)	103(84)
기 타	19(0)	36(0)	64(0)	84(0)	62(0)

자료 :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2000년도 일본경찰백서 번역본, 2001.

注 : ()는 폭력단에 관계된 금융, 불량채권 관련 사범의 건수를 나타낸다.

(4) 合法的인 資金源 活動 等

야쿠자는 임대업, 건설업, 증권거래, 부동산업 등의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합법적인 기업을 경영하여 자금을 획득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외견상은 합법적인 기업경영이더라도 일 추진 과정에서 조직의 위력을 배경으로 행하는 것이 많다. 또한 도박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차용하여 주고 높은 이자로 회수하는 등 고리대금업으로 불법이익을 얻기도 한다.

(5) 야쿠자 組織內的 資金傳達

주로 하부에서 상부로 전달되는 자금은 寄附金⁸⁹⁾ 제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하부직원들은 스스로 돈을 벌고 있는데 일부는 조직에 헌신을 많이 하면 두목들이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우도 있다.

6. 야쿠자의 合法化

치안상태가 좋다는 일본에서 세계적인 조직 범죄단인 야쿠자가 활개치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야쿠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89) 寄附金を 조노킨이라 하여 야쿠자 조직 운영자금을 흡수하기 위하여 그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대는 제도를 말한다.

1992년 일본정부는 야쿠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3월1일자로 ‘폭력단원의 부당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야쿠자 신법)’을 제정하고 경찰은 야쿠자의 7대 조직을 감시와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야쿠자들은 최고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위헌소송을 내고, 우익단체로 체질을 개선하여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강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야마구치구미의 경우에는 오야붕인 와타나베 요시노리의 지시로 160여명의 간부들이 기업체 임원이나 부장, 고문 등의 직급으로 위장 전환하였다.

그러나 ‘야쿠자신법’으로 많은 수의 조직원들이 탈퇴하는 사태가 속출하였고 기업화한 조직이 부도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야쿠자는 자신들을 비방하거나 활동에 많은 방해가 되는 기업인, 정부요인, 경찰간부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였다. 일본경찰은 야쿠자의 이 같은 활동을 합법화가 실패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는 반면, 야쿠자 자신들은 야쿠자가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다.

7. 韓國系 야쿠자



태평양전쟁 전 징병이나 징용으로 일본으로 끌려온 한국인 300만명 중에서 전쟁 후 귀국하지 못한 60만 명은 일본에 잔류한 후에 미군의 구호물자를 거래하던 암시장에서 많은 활약을 하였다. 도쿄에서는 정건영(마이치 히사유키)이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 東聲會를 조직하여 주로 긴자거리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유흥가는 물론이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오사카에서는 고야마고로라는 이름의 한국인이 朋友會라는 조직을 만들어 미나미 거리를 중심으로 세력 확장에 나섰다. 이 2개 조직이 일본에서 활동한 한국계 야쿠자의 시초라고 할 수 있지만 양 조직의 운명은 180도 다르게 전개되었다. 동성회는 야마구치구미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어 스스로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朋友會는 야마구치구미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고 초전에 박살난다.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는 교포야쿠자 조직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 동성회와 야나가와구미이다. 90)

8. 야쿠자 活動의 國際化

1992년 3월 ‘폭력단 대책법’ 시행 이후 강력한 단속으로 미국·독일·콜롬비아·독립국가연합 등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조직범죄 등과 연계 각종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야쿠자의 해외활동은 최근에 들어오면서 총기류와 각성제의 밀수입, 해외를 무대로 한 도박여행 등의 자금원 활동 및 범죄자의 해외 피난처 확보 등으로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총기류를 밀수입하기 위해서 미국, 필리핀 등을 왕래하면서 무장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 및 남미의 범죄조직 등과 연계, 남미산 코카인·헤로인 등 각성제의 밀수 및 밀매의 중핵적인 존재로서 아시아, 유럽지역 등으로 밀반입·밀매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蛇頭’⁹¹⁾와 폭력단이 연합한 중국인의 집단밀항사건, 중국인 여성의 불법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결혼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제조직범죄와 폭력단이 연계하여 불법입국에 끼어 범죄를 감행하고 하와이,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부동산 투자와 동남아 지역에서의 섹스산업 등을 통해 활동 무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第 4 節 우리나라의 組織暴力과 國際組織犯罪와의 連繫

1. 意味 內容의 差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조직폭력’, ‘조직폭력배’, ‘폭력조직’ 등의 용어가 조직범죄의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어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조직폭력은 조직범죄의 한 유형이며 그 자체가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

90) 염장호, 앞의 책, 191-194면.

91) 蛇頭를 헤비 카즈라(뱀 머리)라고 하며 중국출신 밀항자의 권유, 인솔, 반송, 선박이나 위조 여권의 조달, 일본에서의 밀항자 유입, 은닉 등을 행하는 범죄 조직을 말한다.

는 집단이므로 일반적인 조직범죄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⁹²⁾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조직폭력집단’은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조직을 주도하는 최소한의 공동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내 조직폭력이 조직의 규모나 활동 면에서 볼 때 중국의 삼합회, 일본의 야쿠자, 러시아의 마피아 등 동아시아의 조직범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⁹³⁾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에 따라 조직폭력배의 일부 구성원들은 수시로 외국을 드나들면서 해외거주 교민에까지 폭력조직의 결성을 추진하거나 현지 조직범죄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되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의 형성과 변천과정, 그 실태 및 세력분포와 연계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우리나라 組織暴力의 形成과 變遷過程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은 과거 정치깡패의 형태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기원은 일제시대나 해방 이후라고 볼 수 있다.⁹⁴⁾ 이 시대는 정치적인 대립과 내부분쟁으로 인해 매우 혼란한 사회였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주먹’을 무기로 패거리를 이룬 집단들이 나름대로 서식처를 찾아다니며 주로 유흥가 주변에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화된 깡패’가 폭력조직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활동을 하면서 정치변혁기마다 각각 특이한 시대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92) 짐승헌,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책”,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1997, 130면.

93) 정보전략연구소,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침투 저지 방안」, 1995, 442면.

94) 정진수,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1995, 30면.

1) 高麗時代~朝鮮時代

고려시대에는 폭력배를 ‘악소’ 또는 ‘惡小輩’ 라고 하여 골목길에서 어울리다가 부녀자 등을 상대로 패물을 빼앗아 달아나거나 주막에서 공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렸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인 수양대군 때는 한명회의 건의에 따라 한양 ‘건달패’ 두목인 홍윤성을 정권 찬탈에 이용했다는 설도 있고, 조선말기의 대원군도 시정 잡배들과 어울리고 이들을 자주 활용하였다.

2) 日帝 强占期

일제 강점기 시대는 일본 야쿠자들의 활동으로 이에 대항하는 세력인 김두환 과 김기환 등이 주축이 된 폭력배들이 구 마적, 신 마적이라고 불리는 조직으로 조선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해 주기도 하였으나 시장 등지에서 장사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을 관리하여나갔다.

3) 政府 樹立後~1960年代

정부수립 이후는 좌익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김두환을 중심으로 우익 폭력의 역할을 수행했고 이때부터 폭력조직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1950년대에는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수많은 폭력조직이 난무하였으며, 동대문派 부두목 유지광이가 당시 자유당의 집권을 보좌하고자 ‘三友會’ 를 결성하자 이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명동에서 이화룡派가 결성되면서 이들간 세력다툼이 치열하였다. 이 시기를 우리나라의 현대판 조직폭력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다.⁹⁵⁾

1960년대에는 5·16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혁명정부가 ‘국가재건위원회’

95) 金成起, “國際犯罪組織에 대한 對應과 協力方案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 論文, 釜山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60면.

를 결성하여 13,387명을 검거하고 정치적 테러와 시국사건에 계획적으로 개입했다는 동대문派 이정재, 이화수를 처형하고⁹⁶⁾ 478명을 국토건설에 투입함으로써 한동안 폭력배들은 소강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기가 호전되고 사회기강이 느슨해지자 명동을 중심으로 한 명동派, 이화룡의 조직원이었던 신모가 신상사派를 결성하였고, 당시 서울에서는 신상사派, 삼일당派, 청량리派, 호남派, 번개派 등이 활동하였다. 광주에서는 폭력조직이 생성단계를 맞이하면서 대호派, 구오비派, 신오비派로 갈라지고 동아派는 서방派, 대인동派, 시민派로 나뉘져 치열한 관할 구역확장을 위한 세력다툼이 있었다.

4) 1970~1980年代

1970년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폭력배가 증가하고 범 죄규모도 대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때 광주, 전주, 순천, 목포 등지에서 상경하여 무교동일대에서 활동하던 범 호남派들이 1975년 1월 2일 모 호텔 나이트 클럽 영업부장직을 둘러싼 싸움으로 신상사派를 몰아냄으로서 명동을 비롯한 서울 지역의 중심에서 대세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 후 이들 호남派 세력들은 계속되는 내분으로 분파되어 서방派, 양은이派, OB派 등 속칭 3대 패밀리가 형성하게 된다.

1980년 8월 18일 신 군부의 ‘國家保衛常任委員會’는 社會惡 一掃 特別措置의 단행으로 대부분의 조직폭력배들은 대거 구속되거나 피신 지하로 잠적하였다. 또한 三清教育⁹⁷⁾을 실시하게 되면서 폭력조직은 많이 수그러들게 되었다. 그러나 1983년 4월 이후 주요 폭력조직의 구성원들이 석방되기 시작하고 지방의 새로운 조직들이 결성되어 서울로 진출하는 등 여러 신흥조직들이 생겨났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 조직간에 상호대립항쟁이 빈번해졌는데 1986년 8월의 서진 립살롱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당시 고도의

96) 정지운,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6, 15면.
 97) 1984년 말까지 총 38,259명이 三清教育을 받았다.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는 양창배, 앞의 논문, 26면 참조.

경제성장과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성 향락산업이 급격히 발달하자 수많은 신흥 폭력조직이 생기는 등 1985년도는 전국의 폭력조직이 가장 번창하던 시기로 폭력조직의 발호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1982년 야간통행금지 해제’, ‘86 아시안게임’ 과 ‘88올림픽 개최’ 등과 관련하여 폭력배들의 서식 환경이 조성되자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많은 신흥폭력조직이 결성되는 한편, 정부의 국제화 내지 개방화 정책에 따라 해외여행이 자율화되자 수시로 외국을 드나들면서 일본의 야쿠자와 같은 국제조직범죄와도 연계를 시도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⁹⁸⁾

5) 1990年代

폭력배에 대한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戰爭’ 을 선포하고 조직폭력, 인신매매, 강·절도 등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자 이들은 또다시 일시적으로 피신하거나 지하로 은둔하게 되었다.

6) 文民政府 以後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도 전국의 조직폭력 대부분을 검거하였고 폭력 조직과 연계된 자금원인 호텔 카지노 및 빠친코 성인 오락실에 대하여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속적인 소탕작전을 전개하여 폭력조직이 많이 위축되면서 대형화 추세에서 탈피한 소조직 형태로 바뀌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속 수감 중이던 폭력조직 간부 및 조직원들이 출소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침체되었던 조직의 재건 및 세력 확장 등 새로운 형태의 활동영역을 개척하기 위하여 모색하거나 관망중이고 이러한 조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금원도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98) 김성기, 앞의 논문, 61면.

3. 우리나라 組織暴力의 實態와 勢力 分布

우리나라 조직폭력의 수와 구성원 수는 폭력조직 자체의 비밀성과 은밀성 등으로 인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그 이유는 조직이 노출되더라도 조직을 보호하고 자신의 범행도 개인적, 우발적인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신흥조직폭력들이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조직폭력의 규모는 고정적이지 않고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는 2000년도는 21개과 4,599명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을 포함하여 181개과 745명⁹⁹⁾이다. 조직폭력들은 대부분 전국 주요도시를 거점으로 하여 활동하면서 일정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등과 같은 유흥업소와 오락실, 연예인 상대 갈취, 도박장 개장 및 운영, 주류공급 독점, 건설업계 침투, 부동산업 진출, 민사개입 폭력, 사채업, 기업대상폭력 등 전통적 활동유형에서 최근에는 벤처기업에 합법적 진출, 금융업 운영, 증권시장 증권 조작 등 새로운 형태의 조직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영역 다툼형’, ‘갈부림형’에서 ‘합법 기업형’, ‘마피아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겉으로는 조직폭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의 마피어나 일본의 야쿠자처럼 합법을 가장한 기업형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여진다.¹⁰⁰⁾

3. 國際組織犯罪와의 連繫 關係

우리나라 조직폭력이 국제조직범죄와 연계되어 활동하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다. 최근의 언론 보도내용 등을 통하여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에 편승하여 일부 조직의 구성원들은 수시로 외국을 드나들며 미국, 일본 등 해외 거주 교민사회에까지 폭력조직의 결성을 추진하거나 현지 폭력조직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홍콩, 마카오 등지의 해외 도박장에까지 진출하여 국내 일부 부유층

99) 朝鮮日報, 2001년 4월 21일.

100) 양창배, 앞의 논문, 80면.

인사들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대여하여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조직폭력배가 중국의 삼합회나 러시아 마피아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 1990년 3월 ‘백호派’의 행동대장 김양원 등 4명은 야쿠자 조직의 두목 ‘시게야마구미’의 초청으로 도일하여 6~12일간 체류하면서 2개조로 나누어 야쿠자의 조직관리 기법과 폭력수법 등에 관한 연수를 받고 귀국하는 것에서부터 야쿠자와 친분을 맺거나 부산의 ‘칠성派’와 호남지역의 ‘백호派’가 의형제를 결의한 바 있다.¹⁰¹⁾

더욱이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들의 범죄 예비인력 증가 및 한탕주의식 범죄 충동 등 범죄 유발요인이 산재해 있으며 자금세탁, 핫머니 유입, 국제금융 사기 등 신종 국제금융범죄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101) 김성기, 앞의 논문, 64면.

第 4 章 동아시아 組織犯罪의 國內浸透 實態

第 1 節 우리나라에서의 組織犯罪 誘發 環境

1. 國際的 治安需要의 增加

세계는 국제적 금융혼란에 따른 공조체제 강화의 필요성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경제시대로의 진입, 범죄조직의 세계화 및 국가 간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무국경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조직범죄의 유발 요인으로 국제조직범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왕래와 통신의 양, 금융거래량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人的 交流

<표9>에서와 같이 2000년에는 1999년에 비해 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44만여 명이 감소하였으나, 내국인 출입국자 수는 956만여 명으로 12%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558,931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해외 여행객들의 출국러시로 인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들과의 연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외국인 내방객의 증가와 함께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장기 체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다국적화 양상으로 범죄 유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표 9 > 내·외국인 출입국 현황

구 분	'94	'95	'96	'97	'98	'99	'00
총 계	14,204,771	16,010,323	14,709,175	18,059,783	14,975,271	18,192,016	18,750,947
내 국 인	6,855,212	8,265,862	10,017,127	11,975,542	6,073,193	8,560,518	9,562,405
재일 교포	643,883	672,500	613,821	615,976	641,198	651,043	564,246
일 본 인	3,250,210	3,304,925	3,032,346	1,687,275	4,368,567	4,267,902	4,877,200
기 타	3,455,466	3,767,036	4,045,881	3,780,990	3,892,313	4,712,553	3,747,096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01.

2) 物的인 交流

<표10>에 의하면 2000년도의 경우 연간 4억1천8백만여 톤의 물자가 우리나라로 반입되고 있는데 이 물량과 함께 밀반입되는 마약, 총기류 밀입국 등의 규모가 늘어가고 있어 물적 교류 수준이 증가할수록 국제범죄에 의한 피해 또한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

< 표 10 > 우리나라의 입·출항 상품량 (단위 : 톤)

구분	1991	1997	1998	1999	2000
수입화물	210,546,110	370,195,747	333,431,882	384,878,697	418,821,483
수출화물	52,426,113	114,834,490	141,320,084	147,304,435	150,777,920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2000.

3) 國際 通信의 量

통신의 양이 국제범죄와 관련을 가지는 것은 전 세계가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관련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유해정보와 외국 전산망의 불법침투 등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표11>에 의하면 1995년도 보다 1999년도 가 국제우편접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전화이용은 부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 또한 국제정보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 표 11 > 국제통신의 양 (단위 : 통, 천 분)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국제우편접수	28,859,480	26,240,594	24,573,806	22,780,651	22,552,815
국제전화이용(분)	421,990	529,550	619,560	560,741	485,000

자료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보, 2000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백서, 2000.

4) 國際金融去來의 量

국제자금거래는 무역대금거래, 여행경비, 해외근로자 송금 등 경상거래로 인한 것으로서 국제금융거래의 양이 국제범죄와 관련되는 것은 각종 금융범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재산도피와 범죄수익의 세탁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은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급은 1996년도와 1997년도를 제외하고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12 > 국제 자금 거래 내역 (단위 : 100만 미불)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수 입	148,038	158,975	168,788	164,046	171,937
지 급	159,702	180,833	188,152	131,588	152,375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2000.



2. 國·內外 治安環境 變化에 따른 否定的인 要因

우리나라는 조직범죄 활동을 제한하는 특수한 주변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조직범죄의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고 국가적으로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세계는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교통·통신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범죄의 국제화도 필연적인 사회현상이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각종 국제성 범죄가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의 조직범죄들이 국내 조직폭력과 연계, 국내 침투를 기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범죄양상이 경제난으로 약화된 금융통제를 이용한 환투기·불법자금세탁 뿐만 아니라 국제 밀입국 조직까지 적발되고 있다. 즉 단기간의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향락산업의 변창,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출입국절차 간소화 등은 국제범죄가 노리는 좋은 목표물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마약 밀매·밀수, 위폐

유통, 총기류 밀거래, 돈세탁 등의 범죄가 서식하기에 맞는 환경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리적, 환경적,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 할 때 이제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조직범죄가 노리는 최적의 범죄대상 국가가 되었다. 또한 정치체제의 민주화에 수반된 사회통제체제의 약화와 국제화 전략 추진도 그 이유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조직범죄의 활동이 왕성한 국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으며 현지의 교포들이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있어 이들이 연고권을 이용하여 국내에 침투하기 쉬운 나라이기도 하며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또한 1995년의 외환자유화조치로 일상적인 거래에서 외국돈을 사용할 수 있고 외국인 주식투자가 확대되는 등 국제조직범죄가 우리나라를 돈세탁 시장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조직범죄가 자라날 수 있는 내·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第 2 節 동아시아 組織犯罪의 國內浸透 實態

1. 우리나라를 노리는 組織犯罪

인터폴에 의하면 국제조직범죄 가운데 이탈리아계 마피아, 중국계 삼합會 (Chinese Triad Society), 그리고 일본의 야쿠자 등 3개 집단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국제조직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조직들은 날로 초국가적인 불법세력권을 확장하여 국제사회의 심각한 범죄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호한 범죄 서식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마약 밀매·밀수 등 피해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침투가 예상된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이나가와카이, 이즈고테츠 등 재일교포 주축 일본 야쿠자 조직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국내 조직폭력과 연계를 맺고 각종 사업을 전개한 것을 始發로 1992년 5월 홍콩 트라이어드와 연계된 헤로인 밀

반입사건, 1994년 7월 대만 최대 갱 조직인 ‘竹聯幫’ (United Bamboo)의 조직원과 재미교포가 합작하여 22억원대 필로폰 판매기도 사건 등이 적발되었다.

우리나라를 노리는 주요 국제조직범죄는 일본의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중국계의 삼합회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상호 연계되어 활동중이다. 이들 조직들은 주로 마약, 위조달러 유통, 총기류 매매, 돈세탁, 밀입국, 인신매매, 도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림4> 국제조직범죄의 국내 침투 실태



2. 日本 야쿠자

일본의 조직범죄가 우리에게 가장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으며 양국간에 교류가 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의 다수 교포가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일교포는 전체 야쿠자의 10%인 9천명 정도가 조직원으로 가담하고 있다.¹⁰²⁾ 일본정부가 ‘暴力團對策法’을 제정하여 단속을 강화하자 자국 내에서의 활동여건이 어려워진 폭력조직은 해외진출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재일교포 폭력

102) 일본 경찰청이 지정한 총 25개 폭력단 중 3개조직 두목, 오오사카 지역 461개 조직중 94개 조직의 두목, 야마구치구미 간부 126명중 16명을 차지 하고 있다.

조직원들의 국내연고를 이용하거나 우리나라의 조직폭력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부동산투기, 호텔인수, 도박장 및 오락장 진출 등 합법투자를 가장하여 침투하고 있다. 매년 야쿠자 조직이 매춘관광, 사격연습, 골프모임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제주도, 부산 등지에서 수련회, 망년회 등의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외에도 성금기탁, 장학회 설립 등을 통해 활동기반을 구축과 호텔, 빌딩, 백화점 등 부동산 매입, 카지노 투자 등 합병투자를 위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992년대 이후의 우리나라의 폭력조직과 야쿠자와의 연계활동 사례와 침투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1992년 1월 일본 ‘스미요시 가이’ 조직원 7명이 방한하여 전대가 룬살롱 사장 이모 등을 접촉하였고, 같은 달 일본 ‘아이즈고테쓰카이’의 대부 강모가 방한하여 부산 칠성과 연계 인물 김모 등을 접촉하였다.
- ② 1993년 1월 ‘마츠바’ 회 두목 이모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한옥(10억원)을 매입 및 수시로 대규모 조직원을 대동하여 입국 후 조직원 수련회를 개최.
- ③ 1994년 12월 ‘서방과’ 부두목 이모가 재일교포 야쿠자와 연계하여 오사카에서 빠정코장을 개업하고 국내 폭력조직의 해외활동 거점확보 및 활동 자금원으로 이용하였다.
- ④ 1996년 2월 중국 단둥시 소재 밀조공장에서 제조된 히로뽕 275kg을 김포공항을 통해 야쿠자에게 전달하고, 부산 등지의 국내 판매책에게 공급한 혐의로 일본인 아사이 요시마쓰 검거.
- ⑤ 1997년 2월 9일 재일교포 ‘야마구찌파’ 조장이 조직재건 자금확보 목적으로 제주도내 카지노 매입기도도 있었다.
- ⑥ 2001년도 초에 야쿠자 출신이 서울 한남동 사무실에 한국어 가능한 일본인 통역인을 고용, 손바닥만한 나비는 20만원, 어깨용은 50만원, 상·하반신용·잉어 문신은 1천만 원에서 4천만원, 온몸에 새기는 꽃 문신은 4억원을 받고 폭력배나 포주 등 8명에게 문신을 새기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¹⁰³⁾

103) 中央日報, 2001년 10월 26일.

3. 러시아 마피아

구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강력범죄, 경제범죄 등 조직범죄의 급증이다. 소련관 마피아인 ‘글라스노스트 갱단’이 미대륙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진출하여 신용카드와 부도수표 사기, 여권 및 지폐 위·변조 등 돈벌이가 된다면 영역과 국가에 제한없이 그들의 세력권을 확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핵물질 밀매에까지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연해주, 사할린 등 극동지역 마피아가 한국의 용이한 출입국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침투를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러시아 조직범죄는 주로 부산을 무대로 일부 영세무역업자와 조직폭력단에 접근하여 러시아와 관련된 채무해결을 미끼로 마약, 보석류, 무기류 등의 밀매활동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그 수법이나 규모면에서 대담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기류의 밀반입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적발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1995년 7월 부산항에 정박중인 냉동운반선 베르그호 안에서 권총 2정과 실탄 200발, 가스탄 5발을 한국인에게 賣渡하려다가 부산세관에 체포되었으나 세관 관계자는 이들의 배후조직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단지 돈이 궁하여 선원들이 돈벌이를 한 것이라는 결론으로 종결 처리된 적이 있다.
- ② 1995년 7월 러시아 내무성 무기고에서 50정의 AK-74 기관총을 절취하여 부산으로 향하던 러시아 선박 ‘우사’가 러시아 당국에 적발.
- ③ 1995년 7월 러시아 선원 ‘세르게이’가 권총 1정을 냉동 오징어 운반 선에 은닉 밀반입 기도하다 적발.
- ④ 1995년 7월 러시아 ‘지브즈디니 베르그’ 호 선원 2명이 권총 2정을 내국인에게 500불에 판매 기도하다 적발.
- ⑤ 1996년 4월 블라디보스톡 마피아 두목 ‘알렉산더 텐’이 내국인에게 러시아제 신형 군용헬기 설계도 판매를 제의한바 있다.
- ⑥ 1996년 10월 러 마피아와 연계된 ‘사티노’ 호 선원이 소음기 부착된 저격용 22구경 사제권총 밀반입 기도.
- ⑦ 1996년 5월 7일 서울 강남에서 윤락행위를 한 러시아 여성 3명을 적발 강제

출국과 1996년 7월 제주도에서 러시아 여성 4명이 접대부로 불법 취업중인 것을 적발하였고, 또한 2000년 8월에서 10월 어간에 제주도 나이트클럽 무용수 러시아인 2명을 윤락행위로 적발하여 강제 출국하였는데 이들 모두가 마피아가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4. 中國系 三合會

삼합회는 홍콩과 대만에 기반을 둔 중국계 범죄조직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동남아시아의 마약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국제적조직 범죄 집단이다. 삼합회는 각국의 차이나타운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홍콩 뉴욕, 암스텔담 등 세계적 대도시뿐만 아니라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 이르기까지 세계 도처에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50여개 조직 10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⁴⁾ 이들 중 본토조직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치밀하게 주로 마약을 밀반입하고 중국인을 상대로 밀입국을 알선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대만, 홍콩조직에 의한 마약 밀반입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데 1995년 이후의 예로는

- ① 1995년 7월 대만 삼합회 ‘죽연방’ 조직원 장모와 왕모 등 2명이 필로폰 1.5kg을 국내에 밀반입 후 전국에 판매 기도하다가 적발.
- ② 1995년 11월 한국인 광모가 중국에서 홍콩 삼합회가 만들어 중국 삼합회를 거쳐 손에 넣은 위조지폐 3만 4천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
- ③ 1995년 12월 심양과 두목 이모 등 3개 과 34명이 중국에서 필로폰 17kg 국내 밀반입 기도.
- ④ 1996년 3월 국내 마약조직 정모 등이 중국계 삼합회와 연계 필로폰 6.3kg 밀반입 판매기도.
- ⑤ 1997년 8월 국내 마약조직과 중국 흑사회와 연계 필로폰 280g 밀반입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 ⑥ 중국인이 한국인 분실여권 등을 위·변조하여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 밀입국

104) 유남식, 앞의 논문, 66-67면.

하려다 6건 20명이 적발되는 등 인적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국인 분실 여권의 중국인에 의한 불법사용 사례도 계속 발생되고 있다.

- ⑦ 또한 현지 알선조직과 국내브로커가 연계하여 1인당 한화 약 300만원 상당의 고액 알선료를 수수한 뒤 조직적으로 밀입국시키는 사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0년 7월 미국 밀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 7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김포공항을 통과해 여객을 가장 미국 밀입국을 알선해 온 국제 밀입국조직 ‘사두’ 일당 4명을 검거하였고, 2001년 9월에는 삼합회 조직원인 중국인을 총책으로 하여 국내 모집책을 이용하여 여권 밀매조직을 조직, 위조여권으로 중국 동포를 밀입국¹⁰⁵⁾한 것을 적발.
- ⑧ 한국(서울 구로공단과 연남동, 명동 일대) 내 중국 동포타운에도 중국 조직폭력배들이 술집, 음식점 등을 사들이기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사례¹⁰⁶⁾도 있다.
- ⑨ 최근에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의 벽돌공장으로 위장된 제조 시설에서 만들어져 부산항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의 마약범죄 조직에 밀수출하려던 필로폰 91kg(중국산 당면 속에 1kg씩 포장되어 중국선적 정기 화물선에 은닉), 300만명 투약 분량을 적발하였다.¹⁰⁷⁾

5. 小 結論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의 조직범죄들 특히 일본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중국 삼합회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수사기관들의 대응방안을 시급히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105) 中央日報, 2001년 9월 6일.

106) 中央日報, 2001년 8월 16일.

107) 朝鮮日報, 2001년 12월 28일.

第 5 章 동아시아 組織犯罪에 대한 對應 方案

第 1 節 對應方案의 前提要件 및 問題點

1. 組織犯罪 對應의 前提要件

국제조직범죄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조직폭력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광범위한 정보력의 구비, 강력한 수사 체제의 확립, 해외 협력 수단의 확보라는 3가지 요소가 최소한 구비해야만이 국제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될 것으로 보여 진다¹⁰⁸⁾.

1) 廣範圍한 情報力의 具備

21C 사회와 같이 사람과 물자, 자금, 정보의 흐름이 활발한 시대에서는 사전적인 예고정보가 없이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밀입국이나 마약류 밀매, 비합법적인 돈 거래나 국제정보범죄 등을 색출해 낸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국제조직범죄의 특성상 ‘暗數犯罪’ (dark figure, Dunkelziffer)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고나 고발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조직범죄의 침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조직범죄의 국내진출을 차단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정보력의 구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強力한 搜查體制의 確立

국제조직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력이 반드시 있

108) 이상식, 앞의 논문, 53 - 55면.

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나아가 조직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연계성의 흔적이 발견되는 등 국제조직범죄자를 검거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조직범죄의 추세가 광역화하고 수법의 지능화와 巧妙化·組織性·隱密性을 더해감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방법 역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수사망과 첨단 수사능력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3) 海外 協力 手段의 確保

국제조직범죄는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이므로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조직범죄의 예방과 제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해외협력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대외협력체제의 구축은 국제조직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구비해야 할 정보력의 구비와 수사력과 맞먹는 제3의 요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우리의 對應實態 및 對應上 問題點

국제조직범죄는 일반범죄와 달라서 엄격한 내부규율과 위계질서, 철저한 点組織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어서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친 정보수집과 추적이 없이는 犯證을 포착하기가 어렵다. 또한 합법을 가장하고 은밀하게 활동하므로 조직의 구성, 범행계획, 범행사실, 자금조달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조직 상층부의 범죄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총기 등으로 무장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殺傷과 공공시설 파괴, 요인납치 등을 자행하면서 공권력에까지 도전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제조직범죄에 대비하는 우리의 기관별 대응 실태는 여러 部署로 분산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업

무를, 국가정보원은 정보수집과 작성·배포를, 관세청·출입국관리국은 관련 분야에 대한 부분적인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별 대응으로 인하여 기관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범죄를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필수적인 共助體系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배후조직까지 수사를 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시키는 허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국제조직범죄 수사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행 수사여건에서 비롯되는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국제조직범죄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정보기관간의 공조체제 문제이다. 효율적인 수사는 범죄에 관련된 국내·외의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장기간에 걸친 추적, 감시, 공작 등 일관성 있고 기민한 대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권 등이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국내·외 정보는 국정원에서 주로 수집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일관성있고 기민한 공조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조직범죄집단의 국제화 현상을 저지키 위해서는 국제형사활동강화를 통한 외국의 정보·수사기관간의 긴밀한 수사협조체제를 시급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조직범죄와 관련된 해외정보수집과 그 활용상의 문제이다. 오늘날 국제조직범죄는 그 활동범위가 전 세계를 무대로 광역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외정보의 입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주로 국내에서만 수사활동체제를 갖추고 있는 형편이므로 국제간의 연계된 해외정보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국제범죄조직에 대응하는 전문수사요원이나 수사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오늘날 국제조직범죄집단들은 환경, 첨단과학 등 모든 분야를 범죄 대상으로 삼으면서 과학장비를 활용한 첨단범행기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에 걸맞은 분야별 전문지식과 고도로 훈련된 수사요원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수사체제 내에서는 이러한 필요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사요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국제간에 연계된 해외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기 어렵고 국내·외를 연계할 지속적인 추적수사도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첨단과학, 수사장비도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 더구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세계 여러나라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해외연수 수사요원이 부족함은 물론 연수대상국도 특정국가에 한정되고 있어 정보 및 수사활동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정신이 부족하여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수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오늘날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황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사상의 팽배는 범인 또는 피해자 신고 등 범죄통제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第 2 節 우리나라의 機關別 對應現況

1. 檢 察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이고 범죄수사에 관한 중추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전반적인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제마약범죄단을 색출하는 등 국제조직범죄 대응에도 적극적이다.

2. 警 察

경찰에서도 국제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각종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교환하기 위해 국제경찰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 말 현재 총 7개국 13개 지역에 14명의 경찰 해외주재관¹⁰⁹⁾을 파견하여 주재국과 긴밀히 협력함

109) 警察 海外駐在官 파견현황은 프랑스 파리, 러시아 모스크바, 중국 베이징·심양·칭따오·홍콩, 일본 도쿄·오사카, 필리핀 마닐라, 미국 뉴욕·워싱턴·로스엔젤리스, 브라질 상파울로이다. 2000년 한해동안 강제송환 34건, 각종 국제 수사공조

으로써 국제경찰공조 활동의 첨병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관련 주요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우호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¹¹⁰⁾ 또한 인터폴과 연계한 국제공조활동으로서, 인터폴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성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바, 2000년도에는 KNCB¹¹¹⁾를 통해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사안은 총 1,310건으로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42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國家情報院

1999년 1월 21일 법률 제5681호로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국가안보관련 범죄수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國益과 직결된 환경·산업·해외정보의 수집·분석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활동 업무도 관장한다. 또한 국제조직범죄가 급속히 국내에 침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주요 공·항만 지역을 통한 마약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국제범죄 전반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3,179건, 치안관련 정보수집 및 외국 경찰자료수집 4,353건의 활동실적을 올렸다. 경찰청, 앞의 책, 324-325면.

110) 2000년도 주요 경찰관련 국제회의 참여내용은 9월에 러시아연방 내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테러·조직범죄 등 국제성범죄에 있어 양국 간 정보 및 기술의 교환과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한·러 경찰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10월에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의 동북아 4개국 경찰 수뇌부가 서울에 모여 마약, 조직범죄,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경찰장회의’를 개최하였다.

111) 우리나라는 1964년 인터폴에 가입과 동시에 중앙경찰기관에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KNCB : Korean National Central Bureau)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4. 關稅廳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공·항만의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밀수나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다.

5. 法務部 出入國管理局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출입국 심사,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변경 및 재 입국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밀입국자에 대한 정보 및 수사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第 3 節 우리의 對應方案

1. 法·制度的 裝置의 具備

1) 綜合的인 組織犯罪 規制 法規 制定

우리나라의 현행법규는 조직범죄 또는 폭력조직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먼저 刑法 제11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同法 제48조는 범죄조직의 물적 기반을 분쇄하기 위하여 ‘몰수 및 추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제4조는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와 同法 제5조에서 이러한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關한法律’ 제5조의 9는 범죄피해자는 물론 신고자와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증인 등에 대한 면담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特定強力犯罪의處

罰에關한特例法’에서는 피해자와 증인보호를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행 법률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국제조직범죄를 규제하는데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외국의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규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검찰을 중심으로 조직범죄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수사나 자금원 몰수 등에 있어서 여러가지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선진국의 조직범죄관련 법규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좋은 자료를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RICO(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법’은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직범죄 규제법규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은 미국내의 州間通商(interstate commerce)에 영향을 주는 단체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 강탈행위 또는 불법 채무의 징수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벌과 민사벌을 규정하고 있다.¹¹²⁾

일본의 ‘暴力團對策法’은 폭력단원이 행사하는 폭력적 요구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규제 및 폭력단의 대립투쟁 등에 의한 시민생활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아울러 폭력단원의 활동에 의한 피해의 방지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폭력단에서는 언론기관으로부터 공격과 同法の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합법적 활동을 가장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폭력단 조직 내부에서 동요가 발생하고 조직원의 탈퇴가 증가하였다.

한편 독일의 경우는 조직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법규로서 ‘불법 약물 거래와 조직범죄의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未遂犯과 重過失에 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라고 규정

112) 허경미, “국제사회의 조직범죄 대응전략 및 한국의 관련정책상 한계점”, 「수사연구」, 2000, 4월호, 155면.

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潛入搜查나 비밀정보원의 활용과 監聽 등의 근거규정을 두는 등 새로운 형태의 수사 기법을 도입하거나 그것을 법제화함으로써 조직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조직범죄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침투되고 있는 점과 향후 그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규의 제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칭 ‘國際組織犯罪根絶을위한特別法’을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2) 不法收益沒收 制度를 위한 立法的 講究

최근 세계 각국의 형사법 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범죄행위로부터 취득한 수익의 몰수에 관한 문제이다. 다양한 범죄행위 가운데에서도 수익몰수가 문제되는 범죄유형은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범죄와 약물범죄이다. 그 이유는 조직범죄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수익을 보고 있으며, 이 수익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은닉되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이른바 돈세탁 과정을 거쳐 다시 합법 또는 비합법적인 사업에 재투자된다. 그러나 범죄로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국가경제발전에 큰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한다’ (Crime does not pay)고 하는 法諺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책으로 ‘犯罪收益沒收 制度’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가 등장하게 되었다. 조직범죄의 증가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범죄의 밑천이 되는 수익을 박탈해서 범죄자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몰수라 함은 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을 말하며, 他形에 부가하여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¹¹³⁾ 따라서 현행 형

법 및 특별법의 몰수제도는 범죄도구나 일정한 물건의 몰수와 함께 재산상의 이익, 보수, 더 나아가 약물범죄로 취득한 자금 또는 수익금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규정들이 외국의 입법례에서와 같은 수익 몰수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신중히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인 재산권 침해시비를 막기 위하여 수익몰수대상범죄의 결정, 독립몰수제의 도입,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시 어떤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피고인이 추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게 된 경우 그 몰수 또는 추징을 담보할 수 있는 노역장 유치를 하거나 자유형으로 대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¹¹⁴⁾ 그리고 현행법상에 미비된 보전절차를 신설하고, 약물범죄 몰수재산을 다른 몰수재산과 혼합하지 않고 이를 기금형식으로 적립하여 약물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면 약물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¹¹⁵⁾

2. 國際組織犯罪 搜查와 關聯한 搜查制度의 改善

1) 搜查與件의 改善

국제조직범죄는 영속성을 갖는데 반해 이러한 조직범죄를 단속하는 데에는 수사요원 장기화의 어려움, 전문수사요원의 부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의 미흡, 장기간의 기획수사로 인한 활동비 과다소요, 국제조직범죄와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부족 등 구조적·인적 및 물적 요소들의 문제점이 있다. 갈수록 세계화·조직화·교묘화되어지는 범죄에 대응하는 현행 수사기관의 취약한 수사체계로는 국제조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113) 김일수, 「형법총론」, 제8판, 박영사, 2000, 719면.

114) 이병기, “조직범죄수익몰수제도”, 「형사정책연구원」, 제5권 2호, 1994·여름호, 108면.

115) 예컨대, 약물남용자들의 치료시설의 건축이나 약물남용자의 치료시설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약물남용방지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비용으로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사전정보뿐 아니라 국제조직범죄세계의 유래와 내막, 수사대상 조직의 역할과 기존 범죄유형과 사법처리 결과 등 조직범죄의 진상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추적하는 국제적인 안목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화된 수사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¹¹⁶⁾ 그래서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국가로의 연수로 조직의 연구와 실태를 파악하고 피의자 조사 등 전문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관련국가의 언어를 모른다면 국제범죄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수사 어학교육 실시와 활용도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요원으로 국제조직범죄만을 전담케 하고 새로운 搜查技法을 연구·개발하고 국제조직범죄 발생사례를 정밀 분석해 나감으로써 지구촌을 위협하고 우리나라의 안보까지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전국적인 차원의 수사공조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상호간의 공조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검·경과 국세청, 관세청, 은행감독원,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 종사 전문요원들로 시·도별로 편성한 후 상설 또는 非常設化하여 정보수집에서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단계를 일관된 수사지휘 체제하에서 수사할 수 있는 체제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상설의 경우에는 정기적·비정기적인 회의로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범죄분석, 범죄별 동향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그 대비책을 수립한다면 침투시나 예방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국제조직 범죄근절을 위한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현행 인력구조상·기관간의 여건상 상당한 어려움과 절대적인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에 가칭 ‘國際犯罪搜查隊’를 설치할 것도 함께 연구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¹¹⁷⁾됨에 따라 사람, 상품, 자본의

116) 경찰청, 「국제성범죄수사」, 1996, 72면.

자유롭게 출입하고 거래되며 투자된다면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국제조직범죄의 침투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전국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외사과 신설을, 道에서는 중국인 관광객과 밀입국자 등의 증가 추세에 따라 중국 대사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필수적이고 시급하다. 또한 차후 러시아 영사관 설치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수사팀의 재구성으로 관련자료의 수집과 관련국가에 대한 연수 등 사전적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2) 搜查 方法上의 改善

(1) 컴퓨터 資料 檢索

컴퓨터 자료 검색 중 중요한 것이 通貨內譯照會로서, 이는 명백한 법적 근거없이 수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비밀과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어 기본권 침해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법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만약, 영장에 의해서만이 자료수집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국제조직범죄 수사 등 특수한 범죄수사에 한해서 압수, 수색영장 요건을 완화하거나 가칭 ‘檢索許可狀’ 과 같은 제도를 두어 타인의 정보통제권의 침해를 극소화하면서 용의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등에 명시적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潛入搜查 制度의 導入

잠입수사는 국제조직범죄수사를 위하여 유효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으나

117) 濟州國際自由都市特別法(제12장 112조)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1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濟州日報, 2001년 12월 21일자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는 잠입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독일¹¹⁸⁾과 미국¹¹⁹⁾ 등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 이러한 규정을 도입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제조직범죄의 속성상 일반범죄와는 달리 범죄발생 사실 자체를 파악하기 힘들고 피해자의 증언이나 증거의 확보를 위한 협조자를 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통의 수사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사원을 그 조직에 침투시켜서 수사를 한다면 정상적인 수사로는 확보할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적기에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잠입수사에 의하여 얻은 녹음 내지 녹화증거는 증언보다는 조작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러나 잠입수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프라이버시,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침해한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잠입수사는 최후의 수사방법으로 사용하되 사전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허가 하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 미국의 경우처럼 엄격한 통제하에 활용하되 근거와 절차, 기간, 증거와 관련한 입법이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비밀정보원이나 잠입수사관도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3) 陷穽捜査의 活用

陷穽捜査(agent provocateur)는 전통적인 수사기법이었지만 근래에 조직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수사기법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함정수사란 수사기관 또는 그 하수인이 신분을 숨기고 범죄혐의자에게 범죄를 교사한

118) 獨逸 刑事訴訟法 제100조 a 내지 e 및 경찰법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100조 a의 제1항에서 潛入捜査의 요건을 ①불법적인 마약 및 무기거래, 화폐 및 유가증권의 위조에 관한 ②국가보호영역에 관한 ③영업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행하여진 ④단체의 구성원에 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직된 중대한 의미를 갖는 범죄가 행하여졌다는 충분한 실제적인 근거가 존재할 경우에 그 범죄의 규명을 위하여 潛入捜査를 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허영미, 앞의 책, 146면 참조.

119) 미국은 'FBI의 잠입수사에 관한 법무장관 지침' (Attorney Generals Guidelines on FBI Undercover Operations)에 그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후 범죄의 실행을 기다려 그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함정수사를 법치국가원칙에서 도출되는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국가가 시민에게 범행을 권유하고 그 권유된 범행을 한 시민을 처벌하는 것은 자기모순일 뿐만 아니라 국가는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시민의 신뢰’를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미에서는 수사기관의 함정에 걸린 자는 함정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올가미의 항변’(defence of entrapment)에 의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¹²⁰⁾ 우리나라에서는 함정수사를 機會提供型 陷穽搜查와 犯意誘發型 陷穽搜查로 구분하고 있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이미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범행을 범할 기회를 부여하는 수사로서 수사의 상당성을 충족하여 적법하다.¹²¹⁾ 이러한 수사는 위험하고 적발하기 어려운 범죄들, 즉 마약범죄, 밀수범죄, 뇌물범죄, 매매춘 등 이른바 조직범죄에 의해서 많이 행해지고, 그 범행의 은밀성으로 인해서 적발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해 수사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수사기관은 범죄발생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범죄장소가 은밀하고, 증거를 잘 남기지 않으며 목격자도 없고, 많은 경우에 피해자가 없어서 고소나 고발 등에 의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종래의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수사를 기획하고 어느 정도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즉 수사요원들 스스로가 범죄다발지역을 배회하며 의도적으로 범행대상이 되거나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용의선상에 오른 혐의자에게 접근하거나 믿을 수 있는 하수인을 사주하여 범죄혐의자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케 한 후 체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¹²²⁾

그러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전혀 범죄의사가 없는 시민에게 새로운 범죄의사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로서 수사의 상당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¹²³⁾ 이러한 수사방법은 국가가 詐術로 시민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으로

120) 裴種大/李相敦, 「刑事訴訟法」, 제4판, 홍문사, 2001, 180면 이하.

121) 大判 1963. 9. 12, 63도190.

122) 류진철, “組織犯罪搜查技法의 刑事司法的 問題”,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호, 2001, 7,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90면 이하.

헌법상의 적법절차에 위배하는 수사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조직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함정수사를 불가피하게 활용하여야 하지만, 그 유형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국한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증거포착이 어려운 조직범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만을 활용하여야 하고 그 운용의 묘를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4) 證人保護 制度의 補完과 證人免責 制度의 導入 檢討 必要

조직범죄에서 조직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이나 피해자가 개인의 재산은 물론이고 신체에 대한 위협, 나아가 생명까지 그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조직의 보복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피해자나 증인의 진술 거부나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을 막고 수사에 협조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은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증인은 대부분 조직범죄의 구성원이었던 경우도 많고 그리고 피해자인 경우도 조직원으로부터의 제2의 보복의 위협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제조직범죄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개시부터 재판 종료시까지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증인보호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조직범죄규제법에서 규정한 移住制度(relocation)를 들 수 있다. 또한 조직범죄에 관련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범죄규제법과 증인보호개혁법에서 증인보호프로그램(witness security program)을 두고 있다. 증인의 신원을 바꾸어서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살게 하는 방법으로 증인의 주소와 변경된 신원에 대하여 계속 보안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증인의 신변보호 조치는 물론이고, 거주지 재배치, 주거제공, 신원의 변경, 직업알선, 생활비 지원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123) 大判 1982. 6. 8, 82도884.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범죄에 관하여는 시민의 다수가 보복을 두려워하여 수사에 협력을 꺼리기 때문에 조직폭력배의 수사, 검거, 처벌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0년 12월 31일 ‘特定強力犯罪의處罰에關한特例法’ 제7조에서 최초로 ‘증인의 신변보호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외에도 증인보호를 위해서는 증인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공개재판의 제한, 증인의 익명성의 보장, 피고인의 보석제한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라 1999년 8월 31일 ‘特定犯罪申告者등保護法’이 제정되었다. 同法の 적용대상 범죄는 ① 特定強力犯罪의處罰에關한特例法 제2조에서 규정한 범죄와 ② 痲藥類不法去來防止에關한特例法 제2조의 제2항의 범죄, ③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제4조 및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關한法律 제5조 제8의 단체등의 조직과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적용범위는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特定犯罪申告者등保護法은 범죄신고자나 그 가족을 위하여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보완이 요구된다.¹²⁴⁾ 첫째, 輔佐人制度의 경우 신고자 등의 안전과 원활한 증언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는 보좌인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취소하는 경우에 당사자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 설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고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전직이나 이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救助金 制度和 신변안전 조치가 있지만 만약 신분을 완전히 감추거나 새로 개명할 경우에 드는 비용이나 법적 절차 그 한계가 국가의 지원여부에 대한 근거규정이 누락 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特定犯罪申告者등保護法 제16조는 ‘형의 감면에 있어서도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라고 하여 必要的 事由가 아니라 任意的 事由로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범죄신고 등의 재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

124) 허경미, 앞의 책, 151면.

가 되거나 사건해결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경우 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규정이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보완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증인이 자신의 범죄전력과 조직으로부터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증언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여주는 등 효과적인 수사진행과 증거확보를 위하여도 증인면책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 경우에는 공범이 증언을 하면 공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공판 절차를 정지제도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보완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 현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은 이를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 제도의 변화를 주시해야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3. 情報活動 強化



범죄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거나 범인체포 및 범죄조직의 일망타진을 위한 혐의점을 포착하기 위한 첩보의 수집활동은 어느 대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국제조직범죄의 활동에 관한 첩보수집은 많은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첫째, 이들에 대한 첩보의 수집은 전적으로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의 외형상 활동행태들은 각종 과학장비를 동원해서도 수집이 가능하겠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능력과 의도 등은 그들의 접촉이나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범인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조직의 조직원이나 조직에 대한 사정을 알고있는 사람을 협조자로 활용하지 않으면 첩보수집을 위한 접근성이나 문제해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첩보수집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간 및 지역간의 수사 및 정보기관간의 협조체제가 긴요하고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국제조직범죄자들의 행위는

국가간의 관계를 유발시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그 조직이나 조직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그 나라의 정보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이용하면 훨씬 효율적인 정보수집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1) 諜報 및 情報蒐集의 對象

국제조직범죄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 및 첩보수집의 대상은 크게 보아 사람과 활동자금 및 보유무기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조직원의 신원사항, 조직의 규모, 조직의 내부통솔체제, 조직의 운영방법, 조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종류 및 그 성능, 그 조직의 보스, 단계별 지휘자 및 행동대원과 이들의 협조자, 다른 조직들과의 연계활동 등 모든 사항이 우리가 수집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범죄조직의 활동에 대한 대응활동을 전개하면서 특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은 이들의 생명선과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써 범죄조직들이 그들의 활동자금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확보자금의 유통과정을 파악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자금의 유통과정을 파악한다는 점은 많은 단서의 확보와 법적 처벌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익한 점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범죄행위자들에게는 활동자금의 획득 및 사용을 어렵게 하나 한편으로는 개인 사생활의 보호차원으로 볼 때 국제조직범죄의 대응활동을 하는 요원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제약요소로 대두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요원들과의 협조체제도 구축하고 입수된 금융기관 자료는 기본적인 임무수행 외에 어떠한 이유든 타 목적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발전한 통신매체들을 이용한 범죄활동을 적극화할 것이 전망되는 바 이에 대한 것도 그 대상이 될 것이다.

2) 科學的인 情報蒐集 및 蒐集된 資料의 管理

국제조직범죄들의 실체를 파헤치고 조직의 상부선을 검거함으로써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직과 관련된 지속적인 정보 수집이다. 정보수집을 통하여 조직의 계보, 개별조직의 활동내역, 비호세력과의 관련성, 조직원들의 신상 및 조직 내에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하는 점을 파악하는 일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인 정보수집의 첩경은 관련자들이 드나드는 길목에 덫을 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수집된 자료들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분석·조정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이나 필요로 하는 관련 부서나 부처에 적시에 배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갈수록 증가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보유중인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국제조직범죄의 대응활동에 유익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응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3) 情報蒐集을 위한 國際協力 強化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각종 분야에서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범죄의 국제화 현상 및 내국인 범인들의 해외도피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범죄의 국제화현상의 또 다른 양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범죄조직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국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을 좋지 않게 볼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 내에서의 유관부서 및 부처간, 지역별로는 관련 국가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간 협조

와 공조체제로 국제조직범죄들이 활동을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대응책을 강구하는 길만이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협조관계도 첩보나 정보의 수집단계와 수사단계에서도 범죄인 인도 등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4) 活動資金 追跡을 위한 國際金融機關間的 協助

앞으로 국제조직범죄들의 동향은 사회, 경제적 정세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수사당국의 단속을 모면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화, 지능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유흥업소, 오락실 및 연예인 갈취, 도박장 개설, 오락실 경영 등과 함께 앞으로는 일부 대형조직에 대한 민사개입과 기업대상 폭력 그리고 화이트칼라 범죄나 경제범죄형태의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단속을 우려한 나머지 조직의 두목급들은 해외에서 통신망을 통하여 조직원들에게 지시, 감독, 통제 등의 행동만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추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및 국가간 금융기관과 업무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5) 情報蒐集을 위한 協助網의 構築

국제조직범죄의 행위와 관련된 정보 및 첩보수집을 위한 협조망의 구축은 입수하고자 하는 정보나 첩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은 그 유형이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테러활동 등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면서 활동 중인 범죄조직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직의 활동자금이나 조직 보스의 개인적 금전 확보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서 든지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범죄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협조망을 구축해야 할 곳은 이러한 곳이 아닌가 생각된다.

4. 國際協力 強化 方案의 講究

1) 國際的 情報 및 搜查協力體制 強化

국제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전 세계를 무대로 암약하고 있는 국제조직 범죄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 내의 수사당국 등 관련기관들의 철저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관련 국가 등 범세계적인 대응협조체제의 구축이다.

국제조직범죄의 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방안으로는 범죄정보의 교환, 수사공조 및 수사기법 등의 전파, 범죄인 인도 및 국제사법공조체제 등을 포함한 국제조약의 마련과 함께 조사 등 수사기관과 실무 담당자들간의 활발한 인적교류와 유대의 강화라고 보인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의 FBI나 일본의 외사경찰 등 수사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간 범죄인 인도 및 관련정보 교환을 위한 대응기구가 창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2) 刑事 共助體制 構築

국제성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서는 국내치안 질서확립은 물론이고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범죄는 특정사회의 법과 질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침해이고 관련자의 인권보호의 차원에서도 국제사회는 범죄예방과 처벌에 공통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刑事司法共助는 가장 넓게 정의하면 범죄 진압이라는 국제적인 공통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형사사법공조라 하면 ①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즉 외국에서 행해지는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물건의 인도, 압수, 수색, 검증, 문서의 송달, 정보제공 등과 같은 형사절차와 관련된 행위, ② 범죄인인도,

③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④ 형사절차의 이관을 포함한다.

형사사법공조는 일견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각종 범죄의 국제화현상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이는 주권개념을 실질적으로 파악한다면 주권제한의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사법공조에는 외국이 사법공조를 행하는 만큼 자국도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 내에서 당해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相互主義’(Principle of Reciprocity), 사법공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모두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어야 한다는 ‘雙方可罰性의 原則’(Principle of Double Criminality), 그리고 인도된 범죄인은 인도청구의 원인으로 특정된 행위에 한하여 소추·처벌되어야 한다는 ‘特定性の 原則’(Principle of Speciality) 등이 있으나 이러한 원칙적용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¹²⁵⁾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國際協約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 캐나다, 스페인, 필리핀, 파라과이, 칠레, 멕시코, 미국, 몽골, 아르헨티나 등 10개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고, 브라질,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는 미발효 중이며, 러시아, 홍콩은 협상 중에 있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여 발효 중인 국가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미국, 몽골, 중국, 뉴질랜드 등 7개국이고 러시아는 체결되었으며 협상중인 국가는 스페인이다. 그 밖에 법률 행정분야와 국제범죄에 관한 11개의 다자간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2) 國際刑事司法共助法(1991년 3월 8일 제정, 공포)

이 법은 국제거래 및 해외교류의 확대로 범죄의 수사 및 재판에 있어 외국과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과 협조하는 범위와 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125) 경찰청, 앞의 책, 128면.

예방, 진압할 뿐 아니라 범죄의 국제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 외에 대한민국이 외국간에 체결된 공조에 관한 조약, 협정 등 공조조약에 동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조조약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국내적용은 물론 외국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향후 법체계가 상이한 국가와의 공조가 확대, 심화될 경우에 오히려 공조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공조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조의 내용도 외국판결 집행이라든가 형사소추의 이송 등이 제외되어 있는 점, 쌍방 가벌 조항의 해석문제, 외교통상부를 거쳐야 하는 공조요청절차 등의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國際警察協力

국제경찰협력이란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국가 간 사범공조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협력으로써 경찰당국이 주체가 된다. 국제경찰협력의 종류에는 공조의 절차에 따라 구별하면 ㉠ 외교경로를 통한 경찰공조, ㉡ 인터폴을 통한 경찰공조, ㉢ 주재관을 통한 경찰공조를 들 수 있다.

이를 다시 공조요청사항에 따라 분류해보면 ㉠ 범죄인 인도를 위한 공조 ㉡ 증인신문, 압수·수색·검증을 위한 자료수집 교환 등 증거물과 관련한 공조, ㉢ 각종 수배사항 공조, ㉣ 각종 사실 확인 공조, ㉤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및 교육과견, ㉥ 기타 경찰과 관련된 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조를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로 문화와 관습 그리고 법률구조가 상이한 여러 나라가 일일이 범죄에 관한 모든 분야를 조약 내지 협정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외교경로를 통한 경찰공조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등의 이유로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공조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 내지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폴을 통한 경찰공조를 수행하고 있다.

3) 인터폴의 積極的인 活用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공조수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국제 조약인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있으나 이러한 조약은 체결국가 수가 소수이고 그 내용상 한계와 절차상 지연으로 신속한 대응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 따라서 각국의 경찰협력 기구로서 국가이념이나 국제조약이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전세계 구석구석까지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공조 수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인터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폴에 의한 경찰공조는 인터폴 회원국이 운영하는 국제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폴 사무총국 및 각 국 국가중앙사무국(NCB)을 포함한 모든 회원 국가가 신속하고 광범한 분야에서 국제경찰공조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창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폴에 1964년 기구 가입과 동시에 중앙경찰 기관에 ‘인터폴 대한민국국가중앙사무국’(KNCB : Korean National Central Bureau)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000년에는 178개의 회원국에 그 분담금도 2억 9천만 원으로 회원국간 20위로 우리나라 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KNCB는 한국을 대표하는 경찰기구이며 인터폴 사무총국 및 다른 회원국간의 연락과 협조 요청의 창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위하여 전 회원국과 초고속으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원거리통신망(X-400)과 자동검색장치(ASF)가 구축되어 각종 범죄기록·국제 범죄자의 지문·사진자료의 분석·정리 등을 통해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대한 회원국 상호간의 협조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폴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국제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수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도피범·실종자·우범자·장물 등 인적·물적 사항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각 회원국에 통보하는 등 공동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 대상이 각 국의 사람, 재물, 문화재, 경제, 마약 밀거래 등 일반범죄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한되며 정치·군사·인종·종교 문제와 관련된 사안은 엄격히 제외되고 있다.

5. 海外駐在官의 增員과 制度의 積極 活用

최근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등 국민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세계각지에서 우리 상사원, 교민 사업가에 대한 납치, 폭행, 갈취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는 등 자국민의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조직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고 왕래가 잦은 중국, 일본, 러시아에 주재관을 증파와 증원으로 주재국과의 긴밀한 협조 등으로 조직범죄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국제경제활동도 보호하게 될 것이다.

6. 國內·外的인 弘報·啓蒙 活動의 強化

범인체포의 단서확보나 범인 은신처 등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와 신고를 통한 단서의 제보가 필수적이다. 신고유도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향에서 그 운영을 계속하되 신고자의 비밀유지와 사생활 침해방해,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결과,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 및 그 대책의 강구, 신고내용의 중요사안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방법의 문제 등 개선의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는 국제조직범죄가 우리나라에 침투하더라도 검거될 확률이 높다거나 혹은 국제범죄에 대한 감시체제가 뛰어나다는 인식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확산되어 있을 경우 이것이 잠재적 국제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억제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를 예방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범행 후 도피한 중요 해외 도피범들이 잇달아 강제송환 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죄를 짓고 해외로 도망가도 붙잡히고 만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조직범죄와 관련한 국제적인 홍보 계몽 활동은 국제범죄자가 외국인들임을 감안할 경우 이러한 홍보는 외국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第 6 章 結 論

오늘날 동아시아 조직범죄의 활동은 국제사회의 변화추세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불온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같은 유형의 범죄조직들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범죄조직들 간에도 연계활동 징후들을 보이고 있어 범세계적인 네트워크화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수사기관들의 노력이 어느 조직보다 더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까지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안이한 인식 아래 적극적인 활동을 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기반을 둔 국제조직범죄 집단들이 국내조직범죄 집단과 연계하여 국내에 침투하고 있는 실태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향후 우리 사회의 불치병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제조직범죄의 국내침투를 조기에 차단 시켜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제조직범죄를 규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규를 제정하는 등 법·제도적인 장치를 구비하여 효율적인 예방과 수사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사전문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國際組織犯罪搜查隊’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조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잠입수사, 합정수사, 증인보호제도의 보완과 증인면책 제도의 도입 검토 등 현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은 충분히 활용하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관련기관별로의 대처가 시급하다.

셋째, 정보활동단계에서부터 첩보수집과 정보수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위한 기관이 단일화되고 이를 중심으로 수사기관별 공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집된 정보의 관리와 수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가 선행되어

야 한다.

넷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공조를 위하여 정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해외주재관의 증원과 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도 중요한 방안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적인 홍보와 계몽활동으로 국민들의 협조와 신고를 통한 단서의 제보를 유도하고 나아가서 국제조직범죄가 우리나라에 침투하더라도 대부분 검거되고 감시체제가 강력해서 서식하기가 곤란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로써 국제조직범죄자들에 대한 심리적 억제를 통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國內)

- 국가정보연수원, 「국제범죄 조직활동 대응론」, 1996.
- 국가안전기획부, 「21c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 1998.
- 경찰청, 「국제성 범죄수사」, 1996.
-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2000년도 일본경찰백서 번역본」, 2001.
- 경찰청, 「경찰백서」, 2001.
-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0.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 염장호, 「세계조직범죄론」, 오성출판사, 1998.
- 안택원, 「시장과 마피아」, 장원사, 1993.
- 조선호, 「세계의 조직범죄」, 청목사, 1993.
- 전경수, 「마약범죄수사론」, 수사연구사, 1995.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감」 ; 「정보통신백서」, 2000.
- 제주도의정회, 「제주의정」, 2001.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2000.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통계연보」, 2000.

2. 學位 論文(國內)

- 김창균, “국가안보 위협요소로서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 김영철, “국제조직범죄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6.
- 김성기,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대응과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 김상경, “외사경찰의 국제성범죄 대응력 제고 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행정대학원, 1999.
- 유남식, “국제조직범죄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1996.
- 이상식, “외사경찰 조직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제범죄 대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 이진형, “한국의 국제성 범죄실태 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 이치석, “국제조직범죄의 국내침투 실태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 윤 익, “일본폭력조직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2.
- 양창배,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 정진수,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1995.
- 정지운,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6.
- 최진규, “조직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0.

3. 學術誌, 雜誌(國內)

- 류진철, “조직범죄 수사기법의 형사사법적 문제”,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호, 2001.
- 문영호, “마약류 및 조직범죄의 수익의 박탈”, 「대검찰청·UNAFEL주제 공동세미나 자료」, 1996.
- 신의기, “국제조직범죄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수사연구」, 1998, 2.
- 이윤근, “국제조직범죄의 실태 및 대책”,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집」, 1997, 12.
- 이태언, “국제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 제12집, 「부산

- 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1.
- 이홍, “동북아의 재앙·북한 - 중국산 필로폰”, 「월간조선」, 2001, 3.
- 점승헌, “조직범죄의 현행과 대책”,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1997.
- 조병인, 김병화, 최응열, 신의기, 정육상, “국제범죄조직 동향과 수사”, 「수사연구」, 1997, 4. .
- 장준호, “90년대 돈세탁 : 국제적 추세와 국내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9 - 21, 1999.
- 최인섭, “조직범죄의 특성과 실태”, 형사정책연구 제1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허경미, “국제사회의 조직범죄 대응전략 및 한국의 관련정책상 한계점”, 「수사연구」, 2000,

4. 外國 文獻

- Abandinsky Howard, Organized Crime, 3rd, Chicago, Nelson-Hall Inc, 1999.
- P.N. Grabosky, Crime in a shrinking World, No. 83, Trends & issues, Australia, 1998.
- Phil. Williams,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strategic Allinaces, The washington quartely, 1994.
- Roman Boswarth-Davies and Graham Saltmarsh, Money Laundering Champand & Hall, 1994
- Tetsuta Fujimoto, Organized Crime in Japan, Chuo Univ, 1997.
- Louise I. Shelley, "The Threat to World Order", Organized crime, Greenhaven Press, Inc, 1999.

SUMMARY

A research on retaliation methods against domestic infiltration situation of organized crime in East Asia

SONG, YANG-HWA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kuhn)

The East Asian organized crime activities is making its appearance as the new power which threatens our nations security by riding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s changing tendencies at this present date. These organized crime is not only making itself known in similar types of organized crime but it is also showing signs of stretching out to other forms of crime organizations which is giving way to predictions about a worldwide networking of these organized crimes. Such being the case, there should be even more efforts made on the part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bureaus than any other institutions to counteract this force. Even so, there are no active measures being taken in the country under the misconceived false notion that we are not in a serious situation yet. However,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based in East Asia are aligning themselves with the domestic crime organizations, which is accelerating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If counter measures are not come up with within a short period, the situation is very likely to stick and become an incurable problem in our society. Therefore, the domestic infiltration of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should be stopped in the beginning stages by coming up rapidly with counter measures. In order to do this, the following are sugges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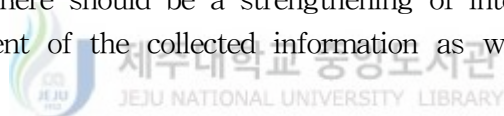
First, by equipping the country with a general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regulation, legislation, enactment as well as laws and systems,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effective prevention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investigation specialists should be trained. This could especially be effective against organized crime by establishing and running the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Investigation Unit. Furthermore, all possible measures within the present systems boundaries like undercover work, making traps, supplementing the witness protection program and implementing the witness immunity program should be made use of and established under the umbrella of national consensus.

The most urgent matter on hand is establishing appropriate measures according to each institution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Jeju Island as the International Free Zone.

Third, various efforts should be preceded from the intelligence activity level to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In order to do this, there should be one single institution for the collecting and sharing of foreign intelligence and based on this, a cooperating system between each investigation unit should be established.

Along with this, there should be a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collected information as well as for the future collections.



Fourth, for a systematic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a government based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different countries. The expansion of foreign resident officials and active usage of this system is one among many important measures.

Finally, with enlightening activities as well as PR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cene, cooperation and notification of evidence should be sought from the citizens. This in turn should spread to the awareness that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would find it difficult to survive in our country even though they may have infiltrated our country because most of them would be rounded up and that the surveillance is impenetrable. By doing this, preventive measures could be achieved through psychological restraint on the part of international organized criminals.